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3733-01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2021. 09.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09. 06.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계 홍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 정현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최종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김보람(독일 Passu 대학 법학박사)

이자영(아주대학교 법학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3
제 2 장 개정 「동물보호법」 안의 구성	6
제1절 개관	6
제2절 변경사항에 대한 조문체계 비교	7
제 3 장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12
제1절 총칙 및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12
제2절 동물의 보호 및 관리	39
제3절 동물실험의 관리 등	129
제4절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141
제5절 반려동물 영업	151
제6절 보칙	171
제7절 벌칙	185
제 4 장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198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2020년 1월 발표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2015~20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이후 2번째로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법정계획임
- 2020년 수립된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는 변화된 국민의식, 정책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새롭게 마련
- 201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이후 첫 번째 법정계획이었던 2015~2019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관리 체계화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서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실행가능성에 대한 고려 부족 문제와 관계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과제가 있었고 동물학대 방지 등의 주요 과제가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됨
- 2020년 1월 발표된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는 “동물보호·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 내면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6대 분야 26개 과제를 중점 과제로 제시
- 추진목표는 다음과 같음
 - a.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공감 제고
 - b.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화
 - c. 유기동물 감소 및 재입양 활성화
 - d.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 농장동물 복지 제고
 - e.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동물 실험 윤리성 제고
 - f.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새롭게 제시된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

2. 연구의 목적

-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비롯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
- 다양한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요구에 부응
-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 도출
 -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농장동물복지개선
 -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개선
- 동물보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합리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법령의 개정안 마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범위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안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주요 내용 정리로 한정함
 - 현행 「동물보호법」을 기준으로 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주요 개정사항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제시된 사항들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다 보면,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과 조문이 추가될 것이므로 일부개정 보다는 전부개정의 방식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
 - 경우에 따라 외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하기는 하겠지만, 본 과업이 「동물보호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이 있다는 점에서, 외국 사례의 자세한 소개는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하지 않음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동물보호법」의 개정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에 있어서도 동물보호법령의 개정을 위한 법령 내용 분석, 입법과정을 위한 자료 작성, 법령체계 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
- 그렇기 때문에 문헌 및 자료에 대한 분석, 관련 전문가 자문, 부처 의견 조회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1. 추진체계

- 본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하나, 수시로 동물 관련 전문가 및 법제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안 검토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

2. 추진일정

- 연구 추진일정은 정기보고회와 수시 실무회의로 구성하여 운영
 - 연구추진계획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착수·중간·최종보고를 기본적으로 진행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4차례의 토론회를 거쳤으며,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동물 전문가들에게 서면자문을 요청

〈표〉 연구용역 관련 회의일정

- | |
|--|
| <input type="checkbox"/> 착수보고회(2020. 1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방향, 내용, 추진방법 확정 및 일정 조율 |
| <input type="checkbox"/> 전문가 자문회의(2021. 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보호법령 개정안 쟁점 관련 자문회의 |
| <input type="checkbox"/> 전문가 자문회의(2021. 1. 19) |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2021. 2. 10)
 - 동물학대의 법적 개념, 범위 재설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실무회의(2021. 2. 23)
 - 동물보호법 개정초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실무회의(2021. 3. 3)
 - 동물보호법 개정초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실무회의(2021. 3. 11)
 - 동물보호법령 개정초안 검토
- 중간보고회(2021. 3. 18)
 -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 쟁점에 대한 정리 내용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실무회의(2021. 4. 8)
 - 동물보호법 개정초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실무회의(2021. 4. 15)
 - 동물보호법 개정초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실무회의(2021. 5. 11)
 - 동물보호법 개정초안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실무회의(2021. 5. 18)
 - 동물보호법 개정초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실무회의(2021. 5. 27)
 - 동물보호법 개정초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실무회의(2021. 6. 3)
 - 동물보호법 개정초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실무회의(2021. 6. 21)
 - 동물보호법 개정초안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실무회의(2021. 6. 29)
 - 동물보호법 개정초안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2021. 7. 16)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법률체계 및 주요 쟁점 검토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2021. 8. 9)
 - 동물보호수준 제고 및 체계 정비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2021. 8. 12)
 - 동물복지 및 동물이용의 윤리성 강화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2021. 8. 17)
 - 동물관리 강화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2021. 8. 9)
 -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
- 최종보고회(2021. 10. 6)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수정의견 반영

제 2 장 개정 「동물보호법」 안의 구성

제1절 개관

- 현행 「동물보호법」은 7개장, 5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은 8개장, 103개 조문으로 구성하여 현행 「동물보호법」의 조문 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표〉 동물보호법 체계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동물실험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5장 영업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제6장 보칙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7장 벌칙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4장 동물실험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장 영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2절 변경사항 조문체계 비교

현행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신설>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신설>	제8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신설>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신설>	제11조(동물사육금지처분 등)
<신설>	제12조(처분의 통지 등)
제9조(동물의 운송)	제13조(동물의 운송)
제9조의2(반려동물 전달방법)	제14조(반려동물 전달방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5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1조(동물의 수술)	제16조(동물의 수술)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8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신설>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신설>	제19조(맹견수입신고)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현행	전부개정안
<신설>	제20조(맹견사육허가 등)
<신설>	제21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신설>	제22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23조(맹견의 관리)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24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신설>	제25조(보험의 가입 등)
<신설>	제26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신설>	제27조(비용부담 등)
<신설>	제28조(기질평가위원회)
<신설>	제29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신설>	제30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신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신설>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신설>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신설>	제33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신설>	제34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신설>	제35조(명의대여 등 금지)
<신설>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36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3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신설>	제38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신설>	제39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신설>	제40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제16조(신고 등)	제41조(신고 등)
제17조(공고)	제42조(공고)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제43조(동물의 반환 등)

현행	전부개정안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제44조(보호비용의 부담)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45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신 설>	제46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제47조(동물의 기증·분양)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4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3장 동물실험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제49조(동물실험의 원칙)
<신설>	제50조(전임수의사)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51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제52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3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제54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55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5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신설>	제57조(심의 후 감독)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신설>	제58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제59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6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1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신설>	제62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신설>	제6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설>	제64조(인증농장의 표시)
<신설>	제65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현행	전부개정안
<신설>	제66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신설>	제67조(인증 취소 등)
<신설>	제68조(사후관리)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제69조(부정행위의 금지)
제31조(인증의 승계)	제70조(인증의 승계)
제5장 영업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71조(영업의 허가)
제33조(영업의 등록)	
<신설>	제72조(맹견취급영업에 대한 특례)
제33조의2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3조의3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제73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제74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제34조 (영업의 허가)	제75조(영업의 등록)
<신설>	제76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35조 (영업의 승계)	제77조(영업 승계)
<신설>	제78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신설>	제79조(직권말소)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신설>	제81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신설>	제82조(거래내역의 신고)
<신설>	제83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제37조(교육)	제84조(교육)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제85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신설>	제86조(과징금의 부과)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신설>	제87조(영업장의 폐쇄)

현행	전부개정안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제39조(출입·검사 등)	제88조(출입·검사 등)
<신설>	제8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제90조(동물보호관)
<신설>	제91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92조(명예동물보호관)
<신설>	제93조(동물복지진흥원)
제42조(수수료)	제94조(수수료)
제43조(청문)	제95조(청문)
제44조(권한의 위임)	제9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97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98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7장 벌칙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제99조(벌칙)
<신설>	제100조(벌칙)
제46조의2(양벌규정)	제101조(양벌규정)
<신설>	제102조(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제47조(과태료)	제103조(과태료)
	부 칙

제 3 장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제1절 총칙 및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 현행 제1장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2개의 장으로 분리하여 규정
-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관련 규정은 별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정리

현행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신설>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신설>	제8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1장 총칙 - 목적(제1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목적 규정의 문구 정리
- 2018. 3. 20. 일부개정을 통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의 조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목적 조항에 추가되었고, 전부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유지
- 참고로, 대만의 동물보호법이나 독일연방의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적규정에서 동물의 보호 자체에 집중하고 있음을 규정하여 우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참고> 동물보호법령의 연혁

- 우리나라에서 처음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1년임: 법률 제4379호, 동물보호법 제정법률(1991. 5. 31. 제정, 1991. 7. 1. 시행)
 -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국제동물보호재단에서 우리나라의 잔인한 개의 도살행위에 대한 비난과 이의 금지를 위한 법제정 요청이 있어 대외적으로 우리의 동물보호의지를 천명하며, 대내적으로 동물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제정한다고 기록
 - 그렇지만 동 제정안에 대한 질의 내용 중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 전통적인 개고기식용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내용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개고기 식용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토록 하였는바 개고기 식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록이 남아있음
 - 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시·도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되, 그 소요경비는 그 동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거세·제각·단미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음

- 제정법률 제6조에서 동물학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적용제한을 규정. 동 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농가소득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축에 대해서도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여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 2007년에는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이 있었음. 이 때 나타난 주된 변화는 다음과 같음:
법률 제8282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2007. 1. 26. 전부개정, 2008. 1. 27. 시행)

(1) 동물등록제의 도입: 현재와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과실로 버려지는 동물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동물 및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2)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 반려동물의 관리소홀로 개에 물리거나 개회충 증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나타남에 따라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3)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 구체화: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위반 여부의 판단에 어려운 측면이 많았음.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및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 금지되는 행위를 제정법에서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4) 동물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을 마련: 동물이 차량으로 운송되는 도중에 상해를 입거나 질식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례의 공급, 상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 동물을 운송하는 자의 준수 사항을 정함
 - (5)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6)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의 도입: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활동 강화를 위하여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지정 또는 위촉
 - (7)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2008년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시행. 시행령에서 새롭게 규정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령 제20518호 동물보호법 시행령(2008. 1. 3. 제정, 2008. 1. 27. 시행)**
- (1) 보호대상동물의 범위를 정함: 특정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보호대상 동물의 범위를 정할 필요에 따라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을 보호대상 동물로 정함
 - (2)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정함: 동물의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으로 정함
 -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률에서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생김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 규모가 큰 동물실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우선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실험동물의 보호와 그 윤리적 취급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4)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제정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집행을 위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 **농림부령 제15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08. 1. 3. 제정, 2008. 1. 27. 시행)**

(1)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등록절차를 정함: 동물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등록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하고,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의 월령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규정: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동물로 인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동물에 붙이도록 하고, 소유자 등이 맹견 등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3)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화학적 방법 등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구목적 등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을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4)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의 등록절차 등을 규정: 법률에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필요. 이에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판매하거나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인력기준을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

○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273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과태료 부과율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2011년에는 다시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 **법률 제10995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2011. 8. 4. 전부개정, 2012. 2. 5. 시행)**
 -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학대 행위의 양태와 방법도 다양해지면서 매우 잔혹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과 운영비리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에 대한 감독과 개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이에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자 하였고, 동물등록제를 모든 자체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거나 실험금지대상 동물을 실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야생 동·식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벌칙 수준과의 형평성 및 동물학대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실험금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 수준을 상향
- 2011년 동물보호법에 전부개정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361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2012. 2. 3. 전부개정, 2012. 2. 5. 시행)**
 - 동물등록제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로 명확히 함
 - 시·도지사는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 관련 공고문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 동물보호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비용징수 통지서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 동물실험이 금지되는 동물을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정하던 것을 인명구조견, 경찰견 및 군견 등으로 확대
- 법률 및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2. 2. 21. 전부개정, 2012. 2. 21.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도서(島嶼), 오지(奧旨), 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은 시·도조례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동물보호센터에는 진료실, 사육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유자가 학대한 동물은 격리하여 치료·보호하고 그 비용은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도록 함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에게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동물장묘업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의 개정: **농림수산물부령 제329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2. 12. 26. 일부개정, 2012. 12. 26. 시행)**
- 동물장묘업 등록 시 장례식장, 동물사체 처리시설, 납골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즉, 장례식장·동물사체 처리시설·납골시설의 의무적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동물사체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 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화장에서 화장 및 건조장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준보다 완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2013년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 **법률 제1173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동물의 생명보호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치행위를 추가하였고, 동물의 구조·보호행위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3. 11. 29. 일부개정, 2013. 11. 29. 시행)**
-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와 같은 작은 동물과 관련된 영업이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중

영업장의 독립성, 급수시설, 배수시설 및 격리실에 관한 기준을 작은 동물의 습성 및 판매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완화

- 즉,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하도록 하되, 동물판매업의 경우에 그 영업장은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거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상용·애완용 동물을 판매하는 시설과 구분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하도록 하되, 동물판매업 중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되,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대한 개별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이 유리 또는 플라스틱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 그 개별사육시설을 격리실로 볼 수 있도록 규정

○ 2013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제120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동물학대의 개념을 정의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물복지를 고려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동물운송 관련 준수사항을 의무화, 운송용 우리를 던져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 물이도구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 기준을 준수하여 배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을 「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 따라 도살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함

○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68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3. 12. 31. 일부개정, 2014. 7. 1. 시행)**

-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를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에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및 동물등록업부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지역으로 축소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등록의 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 동물등록시 필요한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에만 무선식별장치에 입력할 수 있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모두에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했고, 무선식별장치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물등록 수수료에서 무선식별장치 가격에 해당하는 일정 부분을 감액
- 2014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516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2014. 2. 11.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보호대상 동물의 범위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조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과 파충류·양서류·어류에 해당하는 일부동물로 함
 - 동물의 운송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51호)됨에 따라, 식용 목적이 아닌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보호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동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용 우리를 던져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
- 2014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4. 2. 14.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누구든지 동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하되,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5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물에 기관·단체의 명칭과 그 목적을 표시하여 유포하거나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또는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위 기관 또는 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등 동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2014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제12512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2014. 3. 24. 일부개정, 2014. 3. 24. 시행)**
-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등)

- 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 및 동물생산업 신고의 결정사유에서 금지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 2014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7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4. 4. 8. 일부개정, 2014. 4. 8. 시행)**
 - 동물의 운송과 관련된 준수사항이 의무화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자를 동물을 운송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운송하는 자로 변경하여 좀 더 명확히 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유래한 식육·포장육 중 그 운송·도살과정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중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목·방사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2015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제13023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2015. 1. 20. 일부개정, 2015. 1. 20. 시행)**
 - 반려동물의 소변의 경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도 동물의 소변을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공동주택 등에서 거주자 상호 간의 마찰·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2016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3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6. 1. 21.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시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등의 서류를 삭제
 -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 「폐기물관리법」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반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
 - 2016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692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2016. 1. 22. 일부개정, 2016. 1. 22. 시행)**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이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 등의 사무를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의 범위에서 제외
 - 2017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7. 1. 25. 일부개정, 2017. 1. 25. 시행)**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뿐 아니라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경위서를 제외하였으며, 윤리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
 -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관련 법령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였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식을 정비
 - 2017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2017. 3. 21. 일부개정, 2018. 3. 22. 시행)**
 - ‘소유자등’을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 금지행위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등, ‘도박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추가
 -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으며,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

-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
- 2017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7. 7. 3. 일부개정, 2017. 7. 3. 시행)**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동물판매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범위를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확대
 - 동물판매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은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독장비 및 건강검진 검사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시설·인력기준을 정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려는 동물판매업자는 경매수수료와 경매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2018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제15502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
-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
 -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근거를 신설하였고,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
- 2018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709호, 동물보호법 시행령(2018. 3. 20. 일부개정, 2018. 3. 22. 시행)**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651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간 20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 2018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8. 3. 22. 일부개정, 2018. 3. 22. 시행)**
 - 동물전시업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영업으로,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정하는 등 신설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의 세부 범위를 정함
 - 동물생산업이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업계획서와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추가하였으며,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또는 동물운송업자는 매년 3시간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동물전시업은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하였고, 동물전시업자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을 전시하도록 하고,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
- 2018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8. 9. 21.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

- 맹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도록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에 해당하는 개의 종류를 명시하고, 반려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의 사육공간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축에게는 질병 치료 목적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지 않도록 함
- 2019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제16544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2019. 8. 27. 일부개정, 2019. 8. 27. 시행)**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2019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61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2019. 3. 12. 일부개정, 2019. 3. 21. 시행)**
 - 맹견의 소유자 등이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거나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공포, 2019. 3. 21. 시행)됨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을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함
 - 개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나 등록은 월령 3개월 이상부터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규정상의 불일치로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월령 2개월로 거래가능기간과 일치시킴
- 2019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19. 3. 21. 일부개정, 2019. 3. 21.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공포, 2019. 3. 21. 시행)됨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과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하도록 함
-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생포하여 격리 및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2020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2020. 2. 11. 일부개정, 2020. 2. 11. 시행)**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소유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2020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53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2020. 3. 17. 일부개정, 2020. 3. 21. 시행)**
 -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2호, 2018. 3. 20. 공포, 2020. 3. 21.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수의사인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함

○ 2020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0. 8. 21. 일부개정, 2020. 8. 21. 시행)**

- 반려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의 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범위를 정하고,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에게 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기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 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대상 동물에 인식표를 장착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의 개수를 3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한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폐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436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2021. 2. 9. 일부개정, 2021. 2. 9. 시행)**

- 맹견(猛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77호, 2020. 2. 11. 공포, 2021. 2. 12. 시행)됨에 따라,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 및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상해등급 또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일정한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맹견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을 정함

- 맹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함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을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포함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등을 추가함

○ 2021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1. 2. 10. 일부개정, 2021. 2. 12.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맹견(猛犬)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의 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77호, 2020. 2. 11. 공포, 2021. 2. 12. 시행)됨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상해등급 및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의 요건을 정함
 - 동물의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사용해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나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를 두고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2021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021. 6. 17. 일부개정, 2021. 6. 17. 시행)**
-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및 동물위탁관리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명확히 함
 -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
 - 동물전시업자,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을 운송하기 전과 후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동물관련 영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
 -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생산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 강화

● <참고> 외국입법례

1) 대만 동물보호법

제1조(입법 목적 및 적용 범위) ① 동물의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해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한다.
② 동물 보호는 이 법에 따라 규정한다. 다만, 기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독일(연방) 동물보호법

제1조 이 법은 인류의 동반 피조물인 동물의 생명과 안녕을 인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괴로움 또는 상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장 총칙 - 정의(제2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p> <p>가. 포유류</p> <p>나. 조류</p> <p>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p> <p>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p> <p>가. 포유류</p> <p>나. 조류</p> <p>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p> <p>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p> <p>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p> <p>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p> <p>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p> <p>나.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p> <p>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p> <p>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p>	<p>한 개</p> <p>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p> <p>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p> <p>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p> <p>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p>

- ‘맹견을 도사견 등 5종’에서 ‘기질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한 개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기질평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에 따라 정의 신설
-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등 여러 조항에서 반복사용되는 내용을 정의조항에서 규정 (기존 책무규정에 있던 내용을 정의조항으로 이동)

• <참고> 외국입법례

1) 대만 동물보호법

제3조(명사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 개, 고양이 및 기타 사람이 사육 또는 관리하는 척추 동물을 말하며, 경제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및 기타 동물이 포함된다.
2. 경제동물: 모피, 식용, 유용(乳用), 노역용 및 기타 경제적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관리·입양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실험동물: 과학 응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관리·입양하는 동물을 말한다.
4. 과학 응용: 교육용 훈련, 과학실험, 생물학적 제재 제조, 실험상품, 약물, 독성물질 및 장기이식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응용 행위를 말한다.
5. 반려동물: 개, 고양이 및 기타 보고 즐기며 반려(伴侶)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관리·입양하는 동물을 말한다.
6. 반려동물 식품: 중앙 주무기관이 지정한 반려동물의 영양 균형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료 및 기타 물질을 말한다.
7. 사육자: 동물의 소유자 또는 실제 동물을 관리·입양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반려동물 번식장: 상업용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개량하거나 번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9. 반려동물 식품업자: 반려동물 식품의 제조, 가공, 소분·포장, 도매, 판매, 수입, 또는 수출을 하는 업자를 말한다.
10. 학대: 사육, 관리·입양 또는 처분 목적의 필수적인 행위 외에 폭력, 의약품의 부당한 사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동물을 상해하거나 정상적인 생리상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운송인력: 동물 운송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2. 도살 종사자: 도살장에서 경제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시·공연 동물: 오락을 제공할 목적으로 영업장에서 전시·공연 및 탑승용으로 제공되는 동물을 말한다.
14. 전시·공연 동물업: 오락 목적으로 영업장에서 동물을 전시·공연하고 탑승용으로 제공하는 업자를 말한다.

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반려동물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정의”

- 반려동물법에서는 개, 고양이, 그 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정의
- 반려동물법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반려(companion)” 동물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반려동물이 된다고 하고 있음
- 개는 견종에 상관없이 반려동물로 간주하고 경찰견, 방범견 등 작업견들도 반려동물에 해당

- 즉, 동물 소유권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반려동물법 입법 당시 NSW 반려동물 실무그룹(Companion Animals Working Party)은 “동물과 이들을 돌보는 사람의 상호 복지와 편익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로 정의”

3) 독일 주법에서의 “맹견” 등의 정의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 2000년 8월 3일 자 맹견의 사육에 관한 내무부와 시외곽(농촌)지역, 소비자보호부 경찰시행령(POLIZEIVERORDNUNG des Innenministeriums und des Ministeriums Ländlicher Raum und Verbraucherschutz über das Halten gefährlicher Hunde vom 3. August 2000)
- 제1조 투견(높은 위험성을 가진 개)
 - (1) 이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투견은 종에 특수한 특성을 근거로 번식을 통해서나 개별경우에 사육이나 교육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강한 공격성과 위험성이 야기될 수 있는 개를 말한다.
 - (2) 개별 개에 대한 관찰 행정청에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강한 공격성과 위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종에 특수한 특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종과 그룹에 해당하는 개 또한 이들의 동종교배나 이종교배종의 개에서 투견의 특성이 추정된다:
 - 아메리칸 스타퍼드셔 테리어
 - 불테리어
 - 핏 불 테리어
 - (3) 개별경우에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강한 공격성과 위험성에 대한 단초가 제시된 때 특히 제2항에 포함된 개로 다음과 같은 종과 그 동종교배나 이종교배종인 개에서 투견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 불마스티프
 - 스타퍼드셔 불테리어
 - 도고 아르헨티노
 - 보르도 불독
 - 필라 브라질레이로(브라질 마스티프)
 - 스페인 마스티프
 - 네오폴리탄 마스티프
 - 마스티프
 - 토사(일본 마스티프)

1) Marie Swain, “Companion Animal Legislation: Briefing Paper No 1/98, 1998, p.5 <https://www.parliament.nsw.gov.au/researchpapers/Documents/companion-animal-legislation/01-98.pdf>

- (4) 지역경찰청은 정기적으로 심사결과에 기하여 제2항에 따른 추정이 반박되었다는 결정 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투견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확정을 뒷받침한다. 주 관청이(Landratsamt)이 주지방경찰청으로서 심사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도시권역 (Stadtkreisen)에서는 시청(Bürgermeisteramt)이 관할권을 가지며, 심사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와 경찰집행관인 전문공무원이 심사를 행하고, 추가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연방주의 관할 행정청의 투견의 특성에 대한 확정은 개의 사육자가 임시적으로 이 시행령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에 거주한 개의 경우에 제1문에 따른 결정과 동등하다.
- 제2조(맹견) 제1조에 따른 투견이 아니면서 개의 행동을 근거로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다는 전제를 정당화하는 개는 이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맹 견으로 간주된다. 맹견은 특히,
1. 무는 버릇이 있는 개
 2.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뛰어오르거나
 3. 사냥감, 짐승이나 다른 동물을 통제불가능하게 몰아대거나 잡아 뜯는 경향을 가진 개 이다.

3. 제1장 총칙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제3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p>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현행과 같음

4. 제1장 총칙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제4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p>	<p>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책무와 동물복지종합계획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
-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2장으로 이동
-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노력 신설
 -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교육 의무화’를 발표하였으나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 등의 문제로 위헌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교육의 무화에 관한 사항은 추가 검토하여 이후에 반영하기로 함
 - 교육의무를 완화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의 소유자 등이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을 완화

5. 제1장 총칙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제5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현행과 같음

6.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 동물복지종합계획(제6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4.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책무와 동물복지종합계획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
-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한 내용은 제2장으로 이동

7.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 동물복지위원회(제7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p>②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p>④ 그 밖에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정책의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복지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p>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p>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구성의 변경

- (현행) 호선위원장 및 10명 이내의 위원 →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호선된 민간 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

- (심의사항)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자문사항)
 - 동물복지정책의 집행,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복지와 관련한 사항
 -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8.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제8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신 설〉	제8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 ① 시·도 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근거 규정(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

제2절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현행 제2장에서 절 구분 없이 규정하던 내용을 제3장에서 4개의 절로 구분하여 규정

현행	전부개정안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신설>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신설>	제11조(동물사육금지처분 등)
<신설>	제12조(처분의 통지 등)
제9조(동물의 운송)	제13조(동물의 운송)
제9조의2(반려동물 전달방법)	제14조(반려동물 전달방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5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1조(동물의 수술)	제16조(동물의 수술)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8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신설>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신설>	제19조(맹견수입신고)
<신설>	제20조(맹견사육허가 등)
<신설>	제21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신설>	제22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제23조(맹견의 관리)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24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신설>	제25조(보험의 가입 등)
<신설>	제26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신설>	제27조(비용부담 등)
<신설>	제28조(기질평가위원회)

현행	전부개정안
<신설>	제29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신설>	제30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신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신설>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신설>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신설>	제33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신설>	제34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신설>	제35조(명의대여 등 금지)
<신설>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36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3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신설>	제38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신설>	제39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신설>	제40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제16조(신고 등)	제41조(신고 등)
제17조(공고)	제42조(공고)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제43조(동물의 반환 등)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제44조(보호비용의 부담)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45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신설>	제46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제47조(동물의 기증·분양)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4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1.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1) 적절한 사육·관리(제9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7조(적절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적절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현행과 같음

(2) 동물학대 등의 금지(제10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 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p>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이르게 하는 행위</p> <p>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p> <p>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p> <p>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p>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p>	<p>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p> <p>4.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p> <p>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p>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p>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p>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p>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해를 입히는 행위</p> <p>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p>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을 유기(遺棄)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p>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소유자등에 한정되는 금지행위 규정을 명시.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
 - 학대행위의 개념에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유기나 방임의 경우는 그 주체가 ‘보호의무 있는 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참고> 형법상 “유기”되는 보호를 요하는 대상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범할 수 있는 죄임(형법 제271조제1항)
 - <참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추가검토: 동물학대 행위 분류 재검토

- 전부개정안에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재검토 필요
 - 우리 「형법」에서는 ‘동물학대’를 별도의 범죄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행위를 정의하고, 이어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금지행위를 규정, 「동물보호법」 제46조에서 제8조 각 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
 - 현행 규정에서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학대행위의 개념이 뒤섞여 있고, 벌칙규정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학대행위의 일종으로 기술
 - 동물학대의 정의 규정에서는 ‘죽이는 행위’ 및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벌칙 규정에서는 위 개념을 혼합하여 사용
 - 동물학대행위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한 체계적 정리를 통해 처벌 수위에 대한 합리성을 도모하고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참고: 형벌의 구성요건 규정방식>

- 형벌의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기술한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요건을 말함
- 이러한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
- 구성요건의 규정방식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됨
 - 1) 실체규정에서는 일정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과하는 뜻을 규정하고, 벌칙규정에서는 실체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방식
 - 보통 행정법규상 벌칙 규정에 주로 쓰이는 방식임
 - 행정법상의 범죄는 행위 그 자체는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띠지 않으나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비로소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띠게 되는 것이므로 의무규정을 명확히 표현해야 함
 - 2)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규정한 다른 실체 규정과 연결하지 않고 벌칙 규정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방식
 - 구성요건의 전부를 벌칙규정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형사범의 성격을 지닌 벌칙규정에 주로 쓰임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 등의 행위는 해당 행위 자체가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형사범 성격을 지닌 규정임
-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행위는 1)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요건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등의 대부분의 법률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음

○ ‘동물학대’의 유형 구분

- 현행법령은 ‘동물학대’의 유형을 별도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음. 다만, 우리 현행법의 경우, 명확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형을 대략적으로 구분은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학대행위를 단계별로 분류하여 유형화하는 방안을 검토

- 단계를 (살해, 학대치사) > (중대학대) > [학대, 중대유기(유기치상)], 그 밖의 금지행위) > (유기) 로 유형화

- <현행 「형법」 규정례>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육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관련 개정방안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동물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2항)학대행위 ■ (제3항)유기·유실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에 대한 포획·판매·살해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이를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제4항)유기행위 ■ (제5항)그 밖의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동물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살해, 학대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이유없이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잔인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2항) 중대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 동물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제3항) 학대, 중대유기(유기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 동물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 등이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도 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동물이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제4항)유기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자등이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도 하지 않은 행위 - 소유자등이 동물을 최소한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곳에 버린 행위 ■ (제5항)그 밖의 금지행위

● <참고> 국외 입법례

1) 미국, 2020 Oregon Revised Statues, Chapter 167²⁾

167.305 입법결과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공포한다.

- (1) 동물은 고통, 스트레스 및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지각이 있는 존재이다.
- (2) 동물은 고통, 스트레스, 두려움 및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돌봐야 한다.

2) 이하 원문은 <https://www.oregonlaws.org/ors/167.315>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피고인인 동물의 소유자가 재판을 받는 동안 케이지에서 죽을 가능성이 있는 피학대동물을 신속하게 처분(disposition)함으로써 동물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

※ disposition을 처분으로 번역했으나, 영어의 뜻은 정해진 처리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피학대동물의 격리부터 소유권 박탈에 이르는 최종절차까지의 신속한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4) 충분한 사료와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비인가 구조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이 겪는 고통은 이러한 단체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5) 오리건 주는 유기되어 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개인 또는 정부기관의 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관심이 있다.

(6) 유죄판결 전 민사구제의 이용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7) 이해당사자들에게 적합한 통지 및 심리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근거가 불충분한 적법절차 소송을 통한 animal lien foreclosure(동물에 대한 압류선취권) 및 유죄확정판결 전 소유권 박탈(forfeiture) 절차의 지나친 지연 또는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686.442 입법결과

입법부는 동물학대와 사람에 대한 학대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고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 자를 확인하여 기소하고, 추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학대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가중동물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167.315 2급 동물학대

(1)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intentionally, knowingly), 미필적 고의(recklessly)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자의 행위는 2급 동물학대로 분류한다.

(2) 농장의 올바른 동물사육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2급 동물학대는 Class B 경죄³⁾로 처벌한다.

167.320 1급 동물학대

(1)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미필적 고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1급 동물학대로 분류한다.

(a) 동물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한 경우, 또는

(b) 잔인하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 농장의 올바른 동물사육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1급 동물학대는 Class A 경죄로 처벌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급 동물학대도 Class C 중죄(felony)로 처벌한다.

(a) 동물학대 가해자가 과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1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A) ORS 163.160, 163.165, 163.175, 163.185, 163.187⁴⁾ 또는 다른 사법권의 이에 상응하는

범죄, 또는 PRS 135.230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관련 범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또는

(B) 이 조항 또는 ORS 167.32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또는 다른 사법권의 이에 상응하는 범죄, 또는

(b) 미성년 아동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아동에 현장에 있는 상태라 함은 아동이 직접 보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동물학대를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5) 1급 동물학대가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 오리건 형사사법위원회(Oregon Criminal Justice Commission)는 해당 범죄를 양형지침의 범주 6범죄⁵⁾로 분류해야 한다.

167.322 가중 1급 동물학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중 1급 동물학대로 분류한다.

(a) 악의적(maliciously - 고의로 사람을 해하거나 평판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의미로 다음 조항 참조) 동물을 죽이거나, 또는

(b) 동물을 고의(intentionally or knowingly)로 고문하는 행위

(2) 가중 1급 동물학대가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 오리건 형사사법위원회(Oregon Criminal Justice Commission)는 해당 범죄를 양형지침의 범주 6범죄로 분류해야 한다.

(3)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악의적(maliciously)’이란 악의와 미필적 고의로 행동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

(b) ‘고문(torture)’은 고통을 가하겠다는 주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

167.325 2급 동물유기(neglect - 방치/돌보지 않음)

(1)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로 또는 미필적 고의로 또는 과실(negligence)에 따라 이루어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급 동물유기로 분류한다.

(a) 자신의 관리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도 하지 않은 경우

(b) 자신의 관리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반려동물을 묶어 놓는 것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이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2) 2급 동물유기는 Class B 경죄로 처벌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급 동물유기를 Class C 중죄로 처벌한다.

(a) 이 규정 ORS 167.330에 따라 2회 이상 동일 범죄 또는 다른 사법관할 규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b) 11마리 또는 그 이상의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범죄 행위 중 일부인 경우, 또는

(c) 미성년 아동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동물학대 범죄를 행했거나, 또는 ORS 135.230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 범죄로 1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아동에 현장에 있는 상태라 함은 아동이 직접 보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동물학대를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 (4) 오리건 형사사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2급 동물유기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a) 11마리 이상 40마리 이하의 동물을 유기한 경우 범죄등급 6으로 분류
 - (b) 40마리 이상의 동물을 유기하거나 또는 이 조항 (3)(a) 또는 (c.)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따라 유기범죄가 중죄인 경우 범죄등급 7로 분류

167.330 1급 동물유기

- (1)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로 또는 미필적 고의로 또는 과실 (negligence)에 따라 이루어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1급 동물유기로 분류한다.
- (a) 자신의 관리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동물을 최소한의 돌봄도 하지 않은 경우 및 돌봄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동물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죽음에 이른 경우, 또는
 - (b) 자신의 관리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반려동물을 묶어 놓고 이로 인하여 반려동물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 (2) 1급 동물유기는 Class A 경죄로 처벌한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급 동물유기는 Class C 중죄로 처벌한다.
- (a) ORS 167.325에 따라 2회 이상 동일 범죄 또는 다른 사법관할 규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 (b) 10마리 또는 그 이상의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범죄행위 중 일부인 경우, 또는
 - (c.) 미성년 아동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동물학대 범죄를 행했거나 또는 ORS 135.230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로 1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 이 조항의 목적에 따라 아동이 현장에 있는 상태라 함은 아동이 직접 보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동물학대를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 (4) 오리건 형사사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1급 동물유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a) 10마리 이상 40마리 이하의 동물을 유기한 경우 범죄등급 6으로 분류
 - (b) 40마리 이상의 동물을 유기하거나 또는 이 조 (3)(a) 또는 (c.)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에 따라 유기범죄가 중죄인 경우 범죄등급 7로 분류

167.340 동물유기(abandonment - 내다버림)

- (1) 고의로 또는 미필적 고의로 또는 과실로 반려동물 또는 말(equine)을 최소한의 돌봄도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에 버린 경우 동물 유기에 해당한다.
- (2) 동물을 유기한 자가 유기한 동물의 돌봄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당 동물을 동물쉼터, 동물병원 또는 기타 동물들을 위한 쉼터에 유기한 경우라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 (3) 동물유기는 Class B 경죄로 처벌한다.

3) ORS161.615 Maximum terms of imprisonment for misdemeanors

Sentences for misdemeanors shall be for a definite term. The court shall fix the term of imprisonment within the following maximum limitations:

- (1) For a Class A misdemeanor, 364 days.

2) 독일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2조

동물을 사육, 보호관리하거나 보호관리해야 하는 자는,

1. 동물을 그 특성과 욕구에 따라 적절하게 먹이고, 양육하며 행동방식에 맞게 보호해야 한다.
2. 동물에게 통증, 피할 수 있는 고통이나 손상이 가해지는 정도로 동물의 특성에 따라 움직임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적절하게 동물을 먹이고, 양육하며, 행동에 맞게 보호하는 것에 대한 지식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2a조

① 연방 식량농업부(연방부)는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을 통하여 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제2조에 따른 동물의 사육에 대한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에 대한 특별규정을 둘 권한이 있다.

1. 동물이 움직임 가능성이나 집단욕구의 관점에서의 요건
2. 공간, 새장, 다른 우리와 기타 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요건 및 묶는 장치, 먹이공급장치와 물공급장치의 특성에 대한 요건
3. 동물의 보호(보관)에 있어서의 조명상태와 실내 기온의 관점에서의 요건
4. 동물의 감독을 포함한 돌봄에 대한 요건. 이 경우 연방부는 감독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요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 수 있다.
5. 동물을 사육, 보호관리 또는 보호관리해야 하는 자의 지식, 자격요건, 이러한 지식 및 자격의 증명요건
6. 기술적인 장애나 화재의 경우 안전예방조치에 대한 요건

①a. 연방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을 통하여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의 사육, 교육이나 훈련에 있어서의 목표,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정할 권한이 있다.

(2) For a Class B misdemeanor, 6 months.

(3) For a Class C misdemeanor, 30 days.

(4) For an unclassified misdemeanor, as provided in the statute defining the crime. [1971 c.743 §75; 2017 c.706 §22]

4) 대인범죄 - Assault and Related Offenses

§ 163.160 Assault in the fourth degree

§ 163.165 Assault in the third degree

§ 163.168 Crime category classification for assault in the third degree

§ 163.175 Assault in the second degree

§ 163.185 Assault in the first degree

§ 163.187 Strangulation

5) https://sentencing.umn.edu/sites/sentencing.umn.edu/files/oregon_sentencing_guidelines_2018.pdf 참조

①b. 연방부는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을 통하여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제11a 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무가 있지 않은 한 동물, 특히 개와 고양이의 표시에 대한 규정 및 표시유형과 이행에 대한 규정을 둘 권한이 있다.

② 연방부는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와 합의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을 통하여 동물보호에 필요한 다음의 동물 운송사항을 규율할 권한이 있다.

1. 연방부는 이 경우에 특별히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a) 동물의 수송력의 관점에서의 요건
 - b) 동물의 운송수단에 대한 요건
- 1a. 특정 동물의 운송을 위한 특정한 운송수단과 발송법, 특히 착불 발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특정동물의 운송을 위한 특정한 운송수단과 발송법을 규정할 수 있다.
3. 운송하거나 운송에 협력하는 자가 명확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4. 동물을 싣고, 내리고, 보관하고, 먹이고, 돌보는 데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
5. 동물운송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특정한 증명서, 설명서 또는 신고서를 규정하고 이를 제시·소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6. 영업으로 동물운송을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면허(Erlaubnis)를 요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또한 면허 발급시 및 등록 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7. 동물을 운송 중에 시설이나 사업장에서 먹이고, 돌보거나 보관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면허를 요한다고 규정할 수 있고, 유럽공동체나 유럽연합의 법률행위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허발급의 요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동물보호법 제17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척추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자
2. 척추동물에 대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자
 - a) 잔혹하게 극심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한 자
 - b) 장시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극심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한 자

동물보호법 제18조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행정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 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된다.

1.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태 때문에 명백하게 동물이 감당할 수 없거나 동물의 힘을 초과하는 행위의 이행(Leistung)을 동물에게 요구하는 것
 - 1a. 행위의 이행을 저해하는 신체적 상태를 감추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동물에게 명백하

- 게 감당할 수 없는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
- 1b. 훈련 중이거나 스포츠 강연 또는 유사한 공연 중에 있는 동물에게 현저한 고통, 질환이나 손상을 동반하는 조치와 동물의 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적용하거나 스포츠 경연이나 유사한 공연 중에 있는 동물에게 도핑약물을 주입하는 것
 2. 제거할 수 없는 고통이나 질환을 가진 가정 또는 작업장이나 기타 인간의 보호 하에 사육되고 있는 허약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쫓겨나거나 노쇠한 동물을 지체 없이 고통없는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양도 또는 획득하는 것. 이는 제8조제1항제1문에 따른 허가 및 척추동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제1호와 제2호를 근거로 제정되었던 규정에 따른 허가가 그러한 동물의 시술(Versuche)과 관련하여 교부되었던 자나 기관에 병이 든 동물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동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보유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면하거나 포기할 목적으로 가정 또는 작업장이나 기타 인간의 보호 하에 사육되고 있는 동물을 풀어놓거나 내버려두는 것
 4. 예정된 생활공간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종에 따른 영양섭취를 준비하지 못하고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사육하는 야생종인 동물을 자연상태에 풀어놓거나 서식하게 하는 것
 5.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 질환이나 상해를 동반하는 상황에서 동물을 교육하거나 조련하는 것
 6.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 질환이나 상해를 동반하는 상황에서 동물을 영화촬영, 전시, 광고나 유사한 공연에 출연시키는 것
 7. 다른 살아있는 동물에게 잔폭성에 대하여 동물을 훈련시키거나 시험하는 것
 8. 전문적인 사냥훈련의 원칙상 요구되지 않는 선을 넘어 다른 동물을 추적하게 하는 것
 - 8a. 동물을 다음과 같은 공격행위에 훈련시키거나 길들이는 것
 - a) 동물 스스로에게 고통, 질환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행위
 - b) 동종의 동물과의 접촉을 하는 범주에서 동물 스스로 또는 동종의 다른 동물들에게 고통, 질환이나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
 - c)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질환 또는 상해를 야기하는 조건 아래에서만 동물의 보유를 허용하는 것
 9. 건강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강제로 사료를 먹이는 것
 10.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 질환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사료를 제공하는 것
 11. 연방법 또는 주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전기력을 통하여 동물의 종에 따른 행동, 특히 움직임을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적지 않은 고통, 질환이나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
 12. 경연, 복권, 대회나 유사한 공연에서 상품이나 보수로 동물을 내놓는 것
 13. 자신의 성적 행위에 동물을 이용하거나 제3자의 성적 행위를 위하여 훈련시키거나 이용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종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
- ② 공연의 참가자가 승리한 경우 장래의 동물관리자로서 제2조의 요건준수를 보장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제1항제12호에 명시된 공연에서 동물을 제시한 경우 제1항제12호의 금지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미국 동물학대 관련 법령(발췌)

일리노이 주⁶⁾

- 2019년 동물학대법 관련 best주로 선정⁷⁾
- 동물학대에 관해서는 510 ILL. COMP. STAT. 70/2.01 내니 70/4.02에서 규정
- 동물보호법 체계
 1. 일반금지
 2. 처벌
 3. 예외
 4. 상담/ 정신감정
 5. 보호명령
 6. 비용 배상/상환/ 보석금 & 유치권
 7. 압수/ 현장감독
 8. 몰수/ 소유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9. 주간 집행/ 신고
 10. 수의자 신고/ 면책
 11. 사법집행경찰
 12. 성적학대
 13. 동물들의 싸움
 14. 참조 조항

<압수 및 몰수>

- 법원은 재판전 몰수를 명령할 수 있음
- 유죄판결 즉시 법원은 피학대 동물 몰수를 명령할 수 있고 학대 행위자의 향후 동물 소유를 금지할 수 있음
- 학대 행위자가 담보금을 미지급하면 압수한 동물을 몰수할 수 있음

510 ILL. COMP. STAT. 70/3.04 (2017). 체포 및 압수

(a) 이 법에 따라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학대 혐의로 가해 행위자를 체포하는 경찰관은 소유주의 모든 반려동물을 합법적으로 압수 할 수 있고 압수 후에는 이러한 내용과 소유주의 성명, 압수한 동물의 상태, 압수한 동물, 압수 장소와 시간 등을 기입한 진술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압수한 동물은 피학대동물 쉼터 또는 보호시설로 보내고 해당 시설이 피학대 동물의 보호권(custody) 을 갖는다.

피학대 동물을 수용할 시설이나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동물의 건강상의 이유로 장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명령을 받아 해당 동물의 소유주가 소유한 재산이나 사건 현장에 수용하도록 하며, 동물보호시설 담당자 또는 경찰은 보살핌 또는 치료 등 제한된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1감독할 수 있다.

주 검찰은 피학대 동물을 압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압수한 반려동물의 영구 몰수를 청구하는 재판전 몰수청구를 할 수 있다. 몰수 청구서는 해당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소유자, 및 해당 동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모두 송부한다.

(b) 이 법에 따라 피학대동물의 소유주에게 압수에 대한 서면통지와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한다.

(c.) 1961년 형법 또는 2012년 형법 조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는 즉시 법원은 피학대동물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학대 행위자는 영구적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된다. 몰수한 동물은 입양을 보내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 시킨다. 어떤 경우에도 학대 행위자 또는 같은 행위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는 압수된 동물을 입양할 수 없다.

510 ILL. COMP. STAT. 70/3.04 (2017). Arrests and seizures.

(a) Any law enforcement officer making an arrest for an offense involving one or more companion animals under Section 3.01, 3.02, 3.03, 4.01, or 7.1 of this Act may lawfully take possession of some or all of the companion animals in the possession of the person arrested. The officer, after taking possession of the companion animals, must file with the court before whom the complaint is made against any person so arrested an affidavit stating the name of the person charged in the complaint, a description of the condition of the companion animal or companion animals taken, and the time and place the companion animal or companion animals were taken, together with the name of the person from whom the companion animal or companion animals were taken and name of the person who claims to own the companion animal or companion animals if different from the person from whom the companion animal or companion animals were seized. He or she must at the same time deliver an inventory of the companion animal or companion animals taken to the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he officer must place the companion animal or companion animals in the custody of an animal control or animal shelter and the agency must retain custody of the companion animal or companion animals subject to an order of the court adjudicating the charges on the merits and before which the person complained against is required to appear for trial. If the animal control or animal shelter owns no facility capable of housing the companion animals, has no space to house the companion animals, or is otherwise unable to house the companion animals or the health or condition of the animals prevents their removal, the animals shall be impounded at the site of the violation pursuant to a court order authorizing the impoundment, provided that the person charged is an owner of the property. Employees or agents of the animal control or animal shelter or law enforcement shall have the authority to access the on-site impoundment property for the limited purpose of providing care and veterinary treatment for the impounded animals and ensuring their well-being and safety. Upon impoundment, a petition for posting of security may be filed under Section 3.05 of this Act [510 ILCS 70/3.05]. Disposition of the animals shall be controlled by Section 3.06 of this Act [510 ILCS 70/3.06]. The State’s Attorney may, within 14 days after the seizure, file a “petition for forfeiture prior to trial” before the court

having criminal jurisdiction over the alleged charges, asking for permanent forfeiture of the companion animals seized. The petition shall be filed with the court, with copies served on the impounding agency, the owner, and anyone claiming an interest in the animals. In a “petition for forfeiture prior to trial” , the burden is on the prosecution to prove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person arrested violated Section 3.01, 3.02, 3.03, 4.01 , or 7.1 of this Act or Section 26-5 of the Criminal Code of 1961or the Criminal Code of 2012. IL-67

(b) An owner whose companion animal or companion animals are removed by a law enforcement officer under this Section must be given written notice of the circumstances of the removal and of any legal remedies available to him or her. The notice must be delivered in person, posted at the place of seizure, or delivered to a person residing at the place of seizure or, if the address of the owner is different from the address of the person from whom the companion animal or companion animals were seized, delivered by registered mail to his or her last known address.

(c) In addition to any other penalty provided by law, upon conviction for violating Sections 3, 3.01, 3.02, 3.03, 4.01, or 7.1 of this Act or Section 26-5 or 48-1 of the Criminal Code of 1961 or the Criminal Code of 2012, the court may order the convicted person to forfeit to an animal control or animal shelter the animal or animals that are the basis of the conviction. Upon an order of forfeiture, the convicted person is deemed to have permanently relinquished all rights to the animal or animals that are the basis of the conviction, if not already. The forfeited animal or animals shall be adopted or humanely euthanized. In no event may the convicted person or anyone residing in his or her household be permitted to adopt or otherwise possess the forfeited animal or animals. The court, additionally, may order that the convicted person and persons dwelling in the same household as the convicted person who conspired, aided, or abetted in the unlawful act that was the basis of the conviction, or who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e unlawful act, may not own, harbor, or have custody or control of any other animals for a period of time that the court deems reasonable.

오리건 주⁸⁾

- 동물학대 법 조문
- 여기서 몰수(forfeiture)는 소유권 박탈 또는 상실의 의미를 가짐

167.305	입법확인
167.310	ORS 167.310 및 67.351 정의
167.312	연구 및 동물이용
167.315	2급 동물학대
167.320	1급 동물학대

- 167.322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급 동물학대
- 167.325 2급 동물방치
- 167.330 1급 동물방치
- 167.332 동일한 속(genus) 또는 가축 소유 금지; 소유금지 기간 단축; 소유권 포기 절차
- 167.333 동물에 대한 성적학대
- 167.334 ORS 167.333 위반자에 대한 정신감정
- 167.335 ORS 167.315 내지 167.333 예외
- 167.337 동물 특별 사법경찰관(law enforcement animal)의 개입
- 167.339 동물 특별 사법경찰관 폭행
- 167.340 동물유기
- 167.341 동물에 대한 성적학대 선동
- 167.343 불법 감금
- 167.345 주거지 또는 차량 진입권한; 수색영장; 피학대동물 압수통지; 진입으로 인한 피해
- 167.347 형사처분 전 동물보호기관의 피학대 동물 몰수
- 167.348 몰수동물 위탁
- 167.349 동물학대 선동
- 167.350 학대 동물 압수권리; 비용; 압수동물 처분
- 167.351 보행불능 축산물 거래
- 167.352 지원 방해, 동물 압수 및 구조 또는 치료
- 167.355 동물을 이용한 싸움 관여
- 167.360 ORS 167.360 내지 167.372 정의 (이하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한 싸움 [중략])

ORS 167.347

형사처분 전 동물보호기관의 피학대 동물 몰수

(1) (a) 학대 피해를 당하고 쉼터 또는 동물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최종처분이 있기 전에 카운티 또는 기타 동물보호 기관 또는 카운티나 동물보호기관을 대신해 지방검찰이 형사판결 전에 해당 동물을 카운티(시, 군, 구) 또는 보호기관이 압수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행위자에게 압수 청구서 원본을 송달해야 한다. 단, 검찰이 카운티 또는 보호기관을 대신해 청구하는 경우 부본을 송달한다.

(2) 압수 청구 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원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리를 통해 압수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학대 행위자에게 압수청구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압수대상 동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송달하거나 또는 심리가 진행될 카운티 지역 신문에 게재한다.

(3) 심리가 진행되면 청구인은 해당 동물이 학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상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학대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즉시 청구인에게 압수를 명령하고 법원은 절차 처리를 위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

인 비용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ORS 167.350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 상실(forfeiture of rights in mistreated animal)

(1) (a) 학대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상실을 요구하고 정부기관, 조사기관 또는 기타 피학대 동물 보호를 위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소유권 상실을 명령한 경우 법원은 소유권을 적합한 자 또는 입양이사를 밝힌 기관, 카운티 또는 적합한 동물 보호기관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중략]

(3) 법원은 학대행위자에게 동물학대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

ORS167.347 Forfeiture of animal to animal care agency prior to disposition of criminal action

(1) (a) If an animal is impounded pursuant to ORS 167.345 (Authority to enter premises or motor vehicle) and is being held by a county animal shelter or other animal care agency pending outcome of a criminal action charging a violation of ORS 167.315 (Animal abuse in the second degree) to 167.333 (Sexual assault of an animal), 167.340 (Animal abandonment), 167.355 (Involvement in animal fighting), 167.365 (Dogfighting) or 167.428 (Cockfighting), prior to the final disposition of the criminal action, the county or other animal care agency or, on behalf of the county or other animal care agency, the district attorney, may file a petition in the criminal action requesting that the court issue an order forfeiting the animal to the county or other animal care agency prior to the final disposition of the criminal action. The petitioner shall serve a true copy of the petition upon the defendant and, unless the district attorney has filed the petition on behalf of the county or other animal care agency, the district attorney.

(b) A petition may be filed in the criminal action under paragraph (a) of this subsection concerning any animal impounded under ORS 167.345 (Authority to enter premises or motor vehicle) and held pending the outcome of the criminal ac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specific animal is the subject of a criminal charge, or named in the charging instrument, in the criminal action.

(2) (a) Upon receipt of a petition pursuant to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the court shall set a hearing on the petition.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within 14 days after the filing of the petition, or as soon as practicable.

(b) To provide notice on any potential claimant who may have an interest in any animals

impounded pursuant to ORS 167.345 (Authority to enter premises or motor vehicle) and as an alternate form of service upon a defendant who cannot be personally served as required in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a petitioner may publish notice of the filing of the petition, printed twice weekly for up to 14 consecutive days in a daily or weekly newspaper, as defined in ORS 193.010 (Definitions for ORS 193.010 and 193.020), published in the county in which the hearing is to be held or, if there is none, in a daily or weekly newspaper, as defined in ORS 193.010 (Definitions for ORS 193.010 and 193.020), generally circulated in the county in which the hearing is to be held. The notice of the filing of the petition requir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impounded animal or animals, the name of the owner or reputed owner thereof, the location from which the animal or animals were impounded and th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if the hearing has been set at the time of publication, or otherwise the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for the attorney for the petitioner, who shall upon request provide further details on the hearing date, place and time.

(3) At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subsection (2) of this section, the petitioner shall have the burden of establishing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animal was subjected to a violation of ORS 167.315 (Animal abuse in the second degree) to 167.333 (Sexual assault of an animal), 167.340 (Animal abandonment), 167.355 (Involvement in animal fighting), 167.365 (Dogfighting) or 167.428 (Cockfighting). The defendant or any other claimant shall have an opportunity to be heard before the court makes its final finding. If the court finds that probable cause exists, the court shall order immediate forfeiture of the animal to the petitioner, unless the defendant or any other claimant, within 72 hours of the hearing, posts a security deposit or bond with the court clerk in an amount determined by the court to be sufficient to repay all reasonable costs incurred, and anticipated to be incurred, by the petitioner in caring for the animal from the date of initial impoundment to the date of trial.

(4) If a security deposit or bond has been pos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3) of this section, and the trial in the action is continued at a later date, any order of continuance shall require the defendant or any other claimant to post an additional security deposit or bond in an amount determined by the court that shall be sufficient to repay all additional reasonable costs anticipated to be incurred by the petitioner in caring for the animal until the new date of trial.

(5) If a security deposit or bond has been pos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4) of this section, the petitioner may draw from that security deposit or bond the actual reasonable costs incurred by the petitioner in caring for any impounded animal from the date of initial impoundment to the date of final disposition of the animal in the related criminal action.

(6)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re in addition to, and not in lieu of, the provisions of ORS 167.350 (Forfeiture of rights in mistreated animal) and 167.435 (Forfeiture of rights in fighting birds, source birds or property) and ORS chapters 87 and 88. [1995 c.369 § 2; 2001 c.926 § 13; 2009 c.550 § 2; 2011 c.455 § 1; 2013 c.719 § 7; 2017 c.279 § 1]

ORS167.347¹

Forfeiture of animal to animal care agency prior to disposition of criminal action

(1) (a) If an animal is impounded pursuant to ORS 167.345 (Authority to enter premises or motor vehicle) and is being held by a county animal shelter or other animal care agency pending outcome of a criminal action charging a violation of ORS 167.315 (Animal abuse in the second degree) to 167.333 (Sexual assault of an animal), 167.340 (Animal abandonment), 167.355 (Involvement in animal fighting), 167.365 (Dogfighting) or 167.428 (Cockfighting), prior to the final disposition of the criminal action, the county or other animal care agency or, on behalf of the county or other animal care agency, the district attorney, may file a petition in the criminal action requesting that the court issue an order forfeiting the animal to the county or other animal care agency prior to the final disposition of the criminal action. The petitioner shall serve a true copy of the petition upon the defendant and, unless the district attorney has filed the petition on behalf of the county or other animal care agency, the district attorney.

(b) A petition may be filed in the criminal action under paragraph (a) of this subsection concerning any animal impounded under ORS 167.345 (Authority to enter premises or motor vehicle) and held pending the outcome of the criminal ac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specific animal is the subject of a criminal charge, or named in the charging instrument, in the criminal action.

(2) (a) Upon receipt of a petition pursuant to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the court shall set a hearing on the petition. The hearing shall be conducted within 14 days after the filing of the petition, or as soon as practicable.

(b) To provide notice on any potential claimant who may have an interest in any animals impounded pursuant to ORS 167.345 (Authority to enter premises or motor vehicle) and as an alternate form of service upon a defendant who cannot be personally served as required in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a petitioner may publish notice of the filing of the petition, printed twice weekly for up to 14 consecutive days in a daily or weekly newspaper, as defined in ORS 193.010 (Definitions for ORS 193.010 and 193.020), published in the county in which the hearing is to be held or, if there is none, in a daily or weekly newspaper, as defined in ORS 193.010 (Definitions for ORS 193.010 and 193.020), generally circulated

in the county in which the hearing is to be held. The notice of the filing of the petition required under this subsection shall contain a description of the impounded animal or animals, the name of the owner or reputed owner thereof, the location from which the animal or animals were impounded and the time and place of the hearing if the hearing has been set at the time of publication, or otherwise the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for the attorney for the petitioner, who shall upon request provide further details on the hearing date, place and time.

(3) At a hearing conducted pursuant to subsection (2) of this section, the petitioner shall have the burden of establishing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the animal was subjected to a violation of ORS 167.315 (Animal abuse in the second degree) to 167.333 (Sexual assault of an animal), 167.340 (Animal abandonment), 167.355 (Involvement in animal fighting), 167.365 (Dogfighting) or 167.428 (Cockfighting). The defendant or any other claimant shall have an opportunity to be heard before the court makes its final finding. If the court finds that probable cause exists, the court shall order immediate forfeiture of the animal to the petitioner, unless the defendant or any other claimant, within 72 hours of the hearing, posts a security deposit or bond with the court clerk in an amount determined by the court to be sufficient to repay all reasonable costs incurred, and anticipated to be incurred, by the petitioner in caring for the animal from the date of initial impoundment to the date of trial.

(4) If a security deposit or bond has been pos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3) of this section, and the trial in the action is continued at a later date, any order of continuance shall require the defendant or any other claimant to post an additional security deposit or bond in an amount determined by the court that shall be sufficient to repay all additional reasonable costs anticipated to be incurred by the petitioner in caring for the animal until the new date of trial.

(5) If a security deposit or bond has been post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4) of this section, the petitioner may draw from that security deposit or bond the actual reasonable costs incurred by the petitioner in caring for any impounded animal from the date of initial impoundment to the date of final disposition of the animal in the related criminal action.

(6)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re in addition to, and not in lieu of, the provisions of ORS 167.350 (Forfeiture of rights in mistreated animal) and 167.435 (Forfeiture of rights in fighting birds, source birds or property) and ORS chapters 87 and 88. [1995 c.369 § 2; 2001 c.926 § 13; 2009 c.550 § 2; 2011 c.455 § 1; 2013 c.719 § 7; 2017 c.279 § 1]

ORS167.350¹ Forfeiture of rights in mistreated animal

(1) (a) In addition to and not in lieu of any other sentence it may impose, a court may require a defendant convicted under ORS 167.315 (Animal abuse in the second degree) to 167.333 (Sexual assault of an animal), 167.340 (Animal abandonment), 167.355 (Involvement in animal fighting) or 167.365 (Dogfighting) to forfeit any rights of the defendant in the animal subjected to the violation, and to repay the reasonable costs incurred by a government agency, a humane investigation agency or its agent or a person prior to judgment in caring for each animal associated with the criminal proceeding.

(b) If a government agency or a humane investigation agency or its agent provides care and treatment for impounded or seized animals, a court that orders a defendant to repay reasonable costs of care under paragraph (a) of this subsection may not reduce the incurred cost amount based on the agency having received donations or other funding for the care.

(2) (a) When the court orders the defendant's rights in the animal to be forfeited, the court may further order that those rights be given over to an appropriate person or agency demonstrating a willingness to accept and care for the animal or to the county or an appropriate animal care agency for further disposition in accordance with accepted practices for humane treatment of animals. The court may not transfer the defendant's rights in the animal to any person who resides with the defendant.

(b) This subsection does not limit the right of the person or agency to whom rights are granted to resell or otherwise make disposition of the animal. A transfer of rights under this subsection constitutes a transfer of ownership. The court shall require a person to whom rights are granted to execute an agreement to provide minimum care to the animal. The agreement must indicate that allowing the defendant to possess the animal constitutes a crime.

(3) In addition to and not in lieu of any other sentence it may impose, a court may order the owner or person having custody of an animal to repay any reasonable costs incurred by a government agency, a humane investigation agency or its agent or a person in providing minimum care to the animal that are not included in a repayment order under subsection (1) of this section.

(4) A court may order a person convicted under ORS 167.315 (Animal abuse in the second degree) to 167.333 (Sexual assault of an animal), 167.340 (Animal abandonment), 167.355 (Involvement in animal fighting), 167.365 (Dogfighting) or 167.428 (Cockfighting) to participate in available animal cruelty prevention programs or education programs, or both, or to obtain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treatment of mental health disorders that, in the

court's judgment, contributed to the commission of the crime. The person shall bear any costs incurred by the person for participation in counseling or treatment programs under this subsection.

(5) ORS 131.550 (Definitions for ORS 131.550 to 131.600) to 131.600 (Record keep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 do not apply to the forfeiture of an animal subjected to a violation of ORS 167.315 (Animal abuse in the second degree) to 167.333 (Sexual assault of an animal), 167.340 (Animal abandonment), 167.355 (Involvement in animal fighting), 167.365 (Dogfighting) or 167.428 (Cockfighting). Any such animal is subject to forfeiture as provided in subsections (1) to (3) of this section or, if the animal is a fighting bird, as provided in ORS 167.435 (Forfeiture of rights in fighting birds, source birds or property). [Formerly 167.862; 1993 c.519 § 2; 1995 c.663 § 6; 2001 c.666 § 29; 2001 c.926 § § 14a,14b; 2005 c.830 § 28; 2009 c.273 § 2; 2009 c.550 § 3; 2017 c.677 § 4]

뉴욕주

<https://www.nyshumane.org/fact-sheet-forfeiture-of-animals-in-an-animal-cruelty-case/>

6) <https://www.aldf.org/wp-content/uploads/2018/06/ILLINOIS.pdf> 또는

<https://aldf.org/wp-content/uploads/2020/01/Animal-Protection-Laws-of-Illinois-2019.pdf> 참조.

7) <https://aldf.org/wp-content/uploads/2020/02/2019-Animal-Protection-US-State-Laws-Rankings-Report.pdf>

8) <http://www.prosecutingattorneys.org/wp-content/uploads/Oregon-Animal-Cruelty-Summary.pdf> 또는

<https://www.oregonlaws.org/ors/167.347> 참조.

(3) 동물사육금지처분/처분의 통지 등(제11조/제12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11조(동물사육금지처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동물의 소유자등이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에 대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게 해당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12조(처분의 통지 등) ① 법원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② 법원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의 명령일부부터 3일 이내에 결정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이하 이 항에서 “사육금지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육금지처분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사육금지처분 : 동물사육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 2. 동물사육금지가처분 :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확정 판결이 선고된 때

○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한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등을 규정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하고 있지만, 학대행위자의 지속적·반복적 학대행위가 있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장기간 동물을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제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수단이 미흡하여 잔혹하고 반복적인 동물학대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만이 아니라, 피학대 동물에 대한 위험방지 등을 위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개정안 마련 초기 소유권 제한, 소유권 상실 관련 논의가 활발했으나, 급격한 제도변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소유권 제한 관련 논의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사육금지처분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
- 사육금지처분 제도 규정: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학대 동물이 소유자로부터 적절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금지처분을 통해 선제적으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자체는 소유자등에게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행위 재발 방지 목적

※ 국회 제출이후 법률안 변경 논의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국회제출안	수정안
<p>제11조(동물사육금지처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u>검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u> <후단 신설></p> <p><신 설></p> <p>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p>	<p>제11조(동물사육금지처분) ① <u>검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다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구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국회제출안 제2항과 같음)</p>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국회제출안	수정안
<p>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동물의 소유자등이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에 대한 사육금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게 해당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p> <p><신 설></p> <p>제12조(처분의 통지 등) ① 법원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하</p>	<p><삭 제></p> <p><삭 제></p> <p>④ 제3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p> <p>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해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생기거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동물사육금지처분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p> <p>제12조(처분의 통지 등) ① 법원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하</p>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국회제출안	수정안
<p>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② 법원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의 명령일부부터 3일 이내에 결정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이하 이 항에서 “사육금지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육금지처분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p> <p>1. 동물사육금지처분 : 동물사육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p> <p>2. 동물사육금지가처분 :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된 때</p>	<p>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p> <p><삭 제></p> <p>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처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동물사육금지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p> <p>1. 동물사육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p> <p>2. 제11조제5항에 따른 법원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p>

○ 국회제출법률안에 대한 수정

- (제출된 법률안에는) 동물사육금지처분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필요성 제기 → “수용”
 - 동물학대 재발 방지 목적 달성을 위한 처분 요건 명시 필요성 인정
 - 제11조제1항에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다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 동물사육금지처분은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검사’만 사육금지처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지자체장이 사건의 기소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물사육금지처분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경우 청구를 받는 법원 입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여지도 고려필요(ex. 지자체장의 사육금지처분 청구 +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경우)
 -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된 의견 제시
 - (i) 지자체장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책목적상 필요한 내용임: 지자체장은 피학대동물에 대한 구조·보호·격리 의무를 지며(안 제36조 동물의 구조·보호), 동물학대 신고를 받는 주체(안 제41조 신고 등)인 점을 감안할 때, 동물학대 관련 제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장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
 - * 동물학대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이 해당 소유자를 ‘고발’할 경우, 검사 비송치사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및 불기소 등(형사소송법 제258조)을 통지받게 되므로 지자체장도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를 알 수 있음
 - (ii) ‘검사만’ 사육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국회제출안 수정): 다만, (i)의 목적상 지자체장이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 필요
 - (ii)안으로 수정: 그에 따라 제11조제2항 신설
 - * 지자체장이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동물사육금지처분 내용의 삭제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서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두되,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여 가처분 청구 요건은 명시된 사항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해당 내용 삭제
 - * 동물사육금지가처분재판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음
 - *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의 불복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음: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 관련 불복수단을 두지 않았던 것은 불복수단을 규정할 경우 본래 동물사육금지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동물 임시 격리’의 목적이 퇴색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 예컨대,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둘 경우, 동물학대로 재판 중인 자가 동물사육금지가처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은 ‘집행정지’ 될 수 있음. 통상 가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은 재산·금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나, 동물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의 특수한 목적을 감안할 필요도 있음

● **참고 1 <관련 입법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스톱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톱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톱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근금지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는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스토킹행위

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후 피해자가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하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 2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신고” 등 제도 검토>

- 친권상실신고의 개념
 -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와 자의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의미함(「아동복지법」 9) 제3조제2호 참조)¹⁰⁾
 - 부모는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가 됨(제909조제1항)
 -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며(제910조),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제913조)와 거소지정권(제914조), 징계권(제915조), 자의 재산관리(제916조 및 제918조)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친권상실신고의 청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검사는 친권자가 친권의 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동조 제2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청구를 할 경우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동조 제3항). 2020. 12. 29. 개정에 따라 2021. 6. 30.부터는 신고 청구 시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도 존중하도록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요청 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함(동조 제4항)
- 이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천고를 청구할 수 있음(동조 제5항)

- 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함)¹¹⁾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¹²⁾까지의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동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또는 동조제4호가목부터 과목¹³⁾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동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친권상실의 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동조제2항)
-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음(동조 제3항)

□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 등

- 우리 「민법」¹⁴⁾ 제924조 이하에서는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음
- 친권의 일시 정지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동조 제2항 및 제3항)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친권행사의 제한

-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친권의 내용 중 일부인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제925조)

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또,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음(제924조의2)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 후견인의 지정 및 후견 개시

- 부모인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면 미성년 자녀의 보호가 공백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게 됨.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15)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

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

- 미성년자에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를 대신해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민법」 제928조 및 제932조제2항 참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9조제2항)
 -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및 제6조)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제1항)
 - 검사가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후견인의 변경을 위한 심판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제2항)
 - 법원은 추천인이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
 -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등을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아동복지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함

□ 친권상실의 사유

■ 친권의 남용

- 자의 복리실현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 예를 들어, 구타 또는 감금 등의 가혹행위, 보호·교양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자녀의 신상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됨
- 친권의 남용에는 친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판례는 친권상실에 따른 후견개시를 고려해 자를 후견인의 보호 하에 두기보다 가능한 한 친권자의 보호 하에 두는 것이 낫다는 인식하에 남용의 기준을 엄격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음(대법원 1997. 1. 24. 96다43928 참조)

■ 현저한 비행

- 친권자의 품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자를 유기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방탕, 상습적인 도박, 범죄 등(대법원 1993. 3. 4. 93스3 결정)

■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친권자에게 자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음

- 자와 친권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의 여부, 부양이나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친권상실 또는 일시정지/친권제한 선고 절차

■ 심리 - 친권상실 또는 일시정지/친권제한의 선고가 청구되면, 마류 가사비송사건(6호)으로 조정을 거쳐야 함. 따라서 친권상실선고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사전처분 - 조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처분은 집행력을 가지지 않으며, 그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제재가 있음(「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심판의 선고 -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심판은 형성적임. 심판의 확정에 의해 친권 박탈의 효력이 발생함.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의 심판에 대하여 상대방, 「민법」 제925조 상에 규정된 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음(「가사소송규칙」 제103호(즉시항고))

□ 심판의 효과

■ 친권상실 및 일시정지

- 친권상실 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당해 친권자의 친권은 소멸함
- 일시정지 선고의 경우 법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 친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됨
- 다른 부 또는 모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단독친권자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견인이 개시됨

■ 친권일부제한

- 친권 일부제한 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당해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친권이 제한됨

-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당해 친권자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은 소멸함
 - 친권상실, 친권일부제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심판 후 공동친권자였던 부모 중 다른 일방이 단독친권자가 됨
 - 다른 부 또는 모가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후견인이 개시됨
- 그 외 절차 관련 사항
- 신고
 - 친권상실 등 재판이 확정된 때 청구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재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함(「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58조)

9) 2020. 10. 8. 시행, 법률 제17206호, 2020. 4. 6., 일부개정.

10) 이지로, 생활법령, 어린이 범죄 피해자,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9&ccfNo=3&cciNo=1&cnpClsNo=2>, 2021. 1. 26. 현재) 참조.

11) 2020. 10. 1. 시행, 법률 제17807호, 2020. 3. 24., 일부개정.

12)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13)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참고 3> 국외 입법례

1) 미국

- 미국 대다수의 주(44개)는 학대 또는 방치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 피학대/피방치 동물을 압수(seizure)할 수 있도록 허용. 하지만 이후 몰수(소유권 상실)의 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임
- ※ 여기서, 압수(seizure)라는 단어는 영어 그대로를 번역한 것으로 문맥상 피학대동물과 소유자의 분리 또는 피학대동물 보호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몰수 방법	주
압수된 동물의 소유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몰수	델라웨어, 메인,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워싱턴, 위스콘신
담보금 미지급(failure to post security) 시 유죄판결 전 피학대/피방치 동물 몰수 (8개)	알래스카,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시건, 미주리, 뉴욕, 유타, 와이오밍
피학대/피방치 동물의 향후 처분결정을 위해 소유자가 심리를 청구 (6개)	캘리포니아, 조지아,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
압수기관, 보호기관 또는 기소당국에 피해동물의 처분 결정을 위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6개)	애리조나, 일리노이, 캔자스, 몬태나, 오리건, 버몬트
반드시 심리를 거쳐 피해동물의 처분 결정 (8개)	콜로라도, 코네티컷, 플로리다, 아이오와, 뉴멕시코, 사우스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지니아

2) 독일에서의 동물사육금지

-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형사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책임무능력이 입증되거나 배제될 수 없음은 이유로 유죄판결을 면한 자에게는 제20조에 따라 위법한 범죄행위를 계속 저지를 위험이 있는 때 법원에 의한 동물사육금지명령이 선고될 수 있음
- 동물사육금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또는 장기로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이나

14) 2020. 10. 20. 시행,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일부개정.

15) 「민법」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법적 효력으로 발생

- 동물사육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최장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 제20조에 따른 장기의 동물사육금지와 더불어 제20a조는 임시의 동물사육금지를 규정. 판사는 형사절차에서 동물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때에 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임시적인 동물사육금지를 상대적으로 긴급하게 집행
- 임시적 동물사육금지는 그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법원이 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제20조에 따른 금지를 명령하지 않은 때에는 취소되어야 함. 임시동물사육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최장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4) 동물의 운송(제13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u>동물이</u>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물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p>	<p>제13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u>동물 또는 동물이</u>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물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p>

○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 뿐만 아니라 동물을 직접 던지는 행위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5) 반려동물의 전달방법(제14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9조의2(반려동물 전달 방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p>	<p>제14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5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해야 한다.</p>

- 영업자의 동물 판매시 전달방법은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조항 이동하고, 영업자 외 반려동물 전달자의 전달방법을 신규로 명확히 규정

(6) 동물의 도살방법(제15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p>	<p>제15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p>

- 현행 제10조와 같음

(7) 동물의 수술(제16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제11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 현행 제11조와 같음

(8)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제17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p>제1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p>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p>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 표현 간소화 및 변경신고 대상을 명확화(등록대상동물→등록동물)
- 소유자의 주소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소유자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스템상 관리하도록 규정(농림축산식품부령)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보호문제 등으로 부령에 근거하여서는 새행정시스템(행안부)과 연계가 어려워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변경신고 관련 위임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 시·군·구청장에게 동물등록정보 말소권한 부여
 - 현행법상에는 소유자의 변경신고 없이는 등록정보 말소가 불가능
 - 그에 따라 수 년간 동물 유실상태 지속, 오류로 인한 중복 등록 등의 수정이 불가능하여 직권말소권한 부여
-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 마련
- 변경신고 관련 위임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등록정보 말소에 관한 절차를 추가

(9)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제18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p> <p>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8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p>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의 관리의무 강화
 - 등록대상동물이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여 사람 사망·상해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
 - 맹견과 동일하게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신설
 - 유사 입법 사례 :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 제1항의 인식표 부착 의무를 이동하고, 제2항에서 정하던 관리의무를 각호로 분리하여 정리

● <참고> 국외 입법례: 호주

<개관>

- 호주는 세계에서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전체 가구의 약 39%가 개를, 29%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 연방헌법은 어업이나 어장관리를 제외하고 동물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연방정부는 국내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들이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동물의 검역, 야생동물 보호, 가축수출거래 등에 대해서만 담당
- 반려동물 관련 법의 경우 동물의 관리 및 책임의 상당 부분을 주와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반려동물법 법령명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반려동물법인 유사우스웨일즈주의 「반려동물법(Companion Animal Act)」이 있고, 퀸슬랜드 「2008 동물관리(개와 고양이) 법(Animal Management (Cats and Dogs Act 2008)」,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개와 고양이 관리법(Dog & Cat Management Act 1995)」 등이 있음

<반려동물 관련 법률>

- 반려동물의 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고, 주와 준주가 각각 반려동물 관련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내용 및 적용범위도 상이함

- 일부 주는 견주의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돌봄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 노던 준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 또는 가정 내 사육 등 목적이 무엇이든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사육자 등록을 해야 함

〈호주 각 주별 반려동물관련 법〉

주	법령	사육자 등록	반려동물 복지 기준 유무
호주수도 준주	Domestic Animal Act 2000 ¹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등록 - 3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및 반려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 - 반려동물의 소유자인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돌봄 기준 등 의무사항 미준 시 또는 위반시 벌금형 등 형사처벌
퀸즐랜드	Animal Management (Cats and Dogs) Act 2008 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만 의무등록 - 모든 품종의 반려견 등록 - Breeder Society를 통해 등록 - 정부가 반려인 식별번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견만 적용대상 - 퀸즐랜드 반려견 사육에 관한 동물복지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준 또는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뉴사우스웨일스	Companion Animals Act 1998 ¹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 - 위반 시 동물학대 금지규정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General) Regulation 2006) 제20조에 따라 형사 기소 및 벌금형 부과 - 위반이 정도가 심한 경우 동물학대금지법(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79)에 따라 형사 기소 될 수 있음
노던 준주	없음	- 없음	- 없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Dog and Cat Management Act 1995 ¹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등록 - 6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및 반려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음 - 2017 반려동물 사육 및 거래에 관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육을 위한 최소

주	법령	사육자 등록	반려동물 복지 기준 유무
		- 고유 등록번호 제공	기준 미준수 또는 위반 시 2012 동물복지 규정에 따라 형사기소 및 벌금형 부과
태즈메이니아	Cat Management Act 2009 ²⁰⁾ /Dog Control Act 2000 ²¹⁾	- 없음/없음	- 반려견만 적용대상 - 2016 동물복지(반려견) 규정으로 최소한의 사육기준 제시 - 미준수 또는 위반 시 벌금형 등 형사처벌
빅토리아	Domestic Animal Act 1994 ²²⁾ /Domestic Animals Amendment (Puppy Farms and Pet Shops) Act 2017 ²³⁾	- 있음 - 번식을 할 수 있는 암컷이 3 마리 이상인 경우 - 암컷이 10마리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기관에 등록한 경우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 있음 - 반려동물 사육산업 운영에 관한 지침(Code of Practice for the Operation of Breeding and Rearing Businesses) 및 유전결함이 있는 동물의 사육에 관한 지침(Code of Practice for the Breeding of Animals with Heritable Defects that Cause Disease)의 최소 사육기준 미준수 또는 위반 시 형사처벌 할 수 있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Dog Act 1976 ²⁴⁾ /Cat Act 2011 ²⁵⁾	- 반려견 없음 - 반려묘 있음	- 있음 (단 반려견에게만 적용) - 반려견이 건강 및 복지 기준 및 지침

<반려동물 등록제도>

- 호주 반려동물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마이크로 칩을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임
- 반려동물 등록은 의무이고 마이크로 칩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마이크로 칩을 이용하여 등록 시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반려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기가 되기도 함
- 반려인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또는 등록된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경우 변경사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실종된 경우에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임
- 반려동물의 등록은 198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Australasian Animal Registry(AAR)가 주로 담당

- AAR에 따르면 약 3백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고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가 뿐만 아니라 새, 말, 페릿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등록할 수 있음
- 내장된 칩에는 반려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승인을 받은 보호소, 동물병원 등에 한해서만 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²⁶⁾
- 동물등록법도 주별로 상이
- 빅토리아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는 3월령 이전, 뉴사우스 웨일즈와 퀸즐랜드와 12주 이전에 등록하도록 규정
- 반려동물 등록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물 보호소, 쉼터 등의 운영관리 등에 사용
-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법이 없는 노던준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반려동물 미등록 시 형사 벌금을 부과
- 예를 들면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미등록시 일반 견은 최대 50 units, 맹견 또는 위험견은 최대 60 units²⁷⁾의 형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반려동물 관련법이 제정된 후 2017년 처음으로 개정. 개정된 Dog and Cat Management Act 1995, Part 4 Registration(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2017년 7월 1일 반려견의 의무 등록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등록해야 함. 반려동물등록은 개와 고양이 위원회(Dog and Cat Board)가 담당²⁸⁾ 개정된 반려동물 관리법은 반려동물의 등록 절차, 마이크로 칩 삽입, 관리 기관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

〈 마이크로 칩을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

주	적용 법률 및 조항	등록 기한 및 내용
호주수도 준주	- Domestic Animal Act 2000, Section 83 내지 84 - Regulation 7 of the Domestic Animals Regulation 2001	- 생후 12주 이후 - 반려견 또는 반려묘는 판매 또는 분양을 하기 전에 마이크로 칩을 이용해 등록해야 함
퀸즐랜드	- Animal Management (Cats and Dogs) Act 2008, Section 14 - Animal Management (Cats and Dogs) Act 2008, Schedule 2 및 Animal Management (Cats and Dogs) Regulation 2009, Schedule 4	- 생후 12주 이후 - 반려견 또는 반려묘는 판매 또는 분양을 하기 전에 마이크로 칩을 이용해 등록해야 함 - 합리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마이크로 칩 삽입이 해당 동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수의사가 서명한 인증서 제출)를 제외하고
뉴사우스웨일스	- Companion Animals Act 1998,	- 12주 이후

주	적용 법률 및 조항	등록 기한 및 내용
	Section 8 - Companion Animals Regulation 2008, Regulation 8	- 반려견 또는 반려묘는 판매 또는 분양을 하기 전에 마이크로 칩을 이용해 등록해야 함 - Regulation은 마이크로 칩에 포함해야 할 기본 정보 명시
노던 준주	없음	
사우스오스트 레일리아	Dog and Cat Management Act 1995, Part 4	- 마이크로 칩은 주에서 운영하는 Dogs and Cats Online System에 등록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테즈메이니아	- Cat Management Act 2009/Dog Control Act 2000, 10C	- 생후 6개월 이후 - 반려견과 반려묘에 동일하게 적용
빅토리아	- Section 10C, Section 12 - Domestic Animals Regulations 2005, Regulation 12(A) 2	- 생후 3개월 이후 - 모든 반려동물은 마이크로 칩을 사용해 등록하여야 함 - 반려동물을 분양 또는 판매하는 관련 업계는 판매 또는 분양 전에 반드시 마이크로 칩을 삽입해 등록하여야 함
웨스턴오스트 레일리아	- Dog Act 1976/ - Cat Act 2011, Sections 14 내지 23	-반려견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최초 반려인 또는 반려인 변경 시 마이크로 칩을 이용한 등록 의무화 -2013년 11월 30일까지 사육이 제한된 견종을 포함해 맹견 등록 의무화 - 2015년 11월 1일부터 모든 견종의 마이크로 칩을 이용한 등록 의무화 - 반려묘는 6개월 이후, 분양 또는 판매 이전에 마이크로 칩을 이용해 등록

16) 전문은 <https://www.animallaw.info/statute/au-domestic-animals-act-2000-act> 참조.
 17) 전문은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whole/html/inforce/current/act-2008-074> 참조.
 18) <https://legislation.nsw.gov.au/view/whole/html/inforce/current/act-1998-087>
 19) <https://www.legislation.sa.gov.au/lz/c/a/dog%20and%20cat%20management%20act%201995.aspx>
 20) <https://www.legislation.tas.gov.au/view/whole/html/inforce/current/act-2009-089>
 21) <https://www.legislation.tas.gov.au/view/html/inforce/current/act-2000-102>
 22) <https://content.legislation.vic.gov.au/sites/default/files/2020-04/94-81aa081%20authorised.pdf>

<독일, 베를린- 개의 사육과 지도에 관한 법률 >

□ 베를린(Berlin) 2016년 7월 7일 자, 새로운 개의 사육과 지도법(Gesetz zur Neuregelung des Haltens und Führens von Hunden in Berlin vom 07. Juli 2016) 2000년 7월 4일 자 개정시행령에 따른 1998년 5월 11일 자 베를린 개의 사육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as Halten von Hunden in Berlin (HundeVO Bln) vom 05.11.1998 (GVBl. S. 326, 370) geändert durch Verordnung vom 4. Juli 2000 (GVBl. S. 365)

○ 제1조(개의 사육과 지도)

- (1) 개가 사육되는 둘러싸인 소유물은 뜻밖의 개의 탈출에 대하여 적절하게 안전이 유지되어야 한다.
- (2) 개는 둘러싸인 소유물 외부에서 사육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 (3) 개는 둘러싸인 소유물 외부에서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개를 둘러싸인 소유물 외부에서 지도하는 자는 개로 인하여 사람, 동물이나 사물이 위태롭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4) 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i) 어린이 놀이터
 - ii) 일광욕용 풀밭으로 표시된 곳
 - iii) 수영시설과 수영시설로 표시된 공공수영장소

○ 제2조 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2미터 이하의 목줄에 묶인 채로 들어갈 수 없다. 목줄의 상태는 개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 i) 계단부나 기타 공동 주거이용공간, 다세대주택의 진입로
- ii) 공공집회와 소풍, 축제와 기타 사람이 모이는 공연장
- iii) 공공의 자연시설과 휴양시설
- iv) 진입로에 별도의 안내판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개의 출입이 허용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숲
- v) 공공 교통수단

23) https://content.legislation.vic.gov.au/sites/default/files/7be43a24-198a-30f4-94c9-c4cdcc003fb9_17-069aa%20authorised.pdf

24) [https://www.legislation.wa.gov.au/legislation/prod/filestore.nsf/FileURL/mrdoc_44363.pdf/\\$FILE/Dog%20Act%201976%20-%20%5B06-g0-00%5D.pdf?OpenElement](https://www.legislation.wa.gov.au/legislation/prod/filestore.nsf/FileURL/mrdoc_44363.pdf/$FILE/Dog%20Act%201976%20-%20%5B06-g0-00%5D.pdf?OpenElement)

25) [https://www.legislation.wa.gov.au/legislation/prod/filestore.nsf/FileURL/mrdoc_44357.pdf/\\$FILE/Cat%20Act%202011%20-%20%5B00-h0-00%5D.pdf?OpenElement](https://www.legislation.wa.gov.au/legislation/prod/filestore.nsf/FileURL/mrdoc_44357.pdf/$FILE/Cat%20Act%202011%20-%20%5B00-h0-00%5D.pdf?OpenElement)

26) 호주 동물등록소(Australasian Animal Registry) 홈페이지 <https://www.rasnw.com.au/animal-registry/about-aar/> 참조.

27)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벌금은 1 유닛(unit)이 110 호주달러이다.

28) 전문은 <https://www.legislation.sa.gov.au/LZ/C/A/DOG%20AND%20CAT%20MANAGEMENT%20ACT%201995/CURRENT/1995.15.AUTH.PDF> 참조.

2.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1) 맹견수입신고(제19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19조(맹견수입신고) 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국내 사육하는 맹견의 파악 및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식품부장관(검역본부 위임)에게 신고하도록 함
- <초기 검토안>에서는 개인의 사육목적 반입 규제 검토하였으나 최종안에서는 수입신고제로 완화
 - 맹견수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허가제 운영
 - (현행) 동물수입(생산)업자는 지자체에 등록(허가)하여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 상 맹견 수입(생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현재 수입업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10마리까지 견종에 관계없이 수입 가능 (「가축전염병예방법」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견종 기재란이 있으나 견종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수입을 허용 중
 - (맹견 수입 및 생산 허가) 동물수입업·생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관련 국외 입법 사례: 독일 >

위험한 개의 국내반입 및 수입제한법(Gesetz zur Beschränk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 gefährlicher Hunde in das Inland)

동법은 2001년 4월 12일 제정되어 2001년 4월 21일에 발효되었고, 총 7개의 조문에서 개념정의(Begriffsbestimmungen(제1조), 수입금지와 반입금지(Einfuhr- und Verbringungsverbot(제2조), 감시감독(Überwachung(제3조), 세관의 협조(Mitwirkung der Zollstellen(제4조), 형사처벌규정(Strafvorschriften(제5조), 벌금규정(Bußgeldvorschriften(제6조), 몰수(Einziehung(제7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1조의 개념정의에 따를 때 반입은 다른 유럽연합 구성국으로부터 독일 내로의 운송을, 수입은 제3국으로부터 독일 내로의 운송을 의미하며, 동법의 적용대상인 위험한 개는 핏불-테리어(Pitbull-Terrier), 아메리칸 스타포드셔-테리어(American Staffordshire-Terrier), 스타포드셔-불테리어(Staffordshire-Bullterrier), 불테리어(Bullterrier)와 그 교배종 및 주법에서 정하는 개로 정의된다.

제2조(수입금지와 반입금지) 제1항은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타포드셔-테리어, 스타포드셔-불테리어, 불테리어 종인 개 및 이들 종간의 이종교배종이나 타 종과의 이종교배종이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주법에서 상시 붙들려 있어야 한다고 정하는 위험성이 추정되는 기타 종의 개 및 이들 종간의 이종교배종이나 타 종과의 이종교배종은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

제2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로 법규명령을 통하여 1. a) 특정한 개는 동물전염병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 국경검문소를 거쳐서만 국내로 수입되거나 이 국경검문소에 인도되어야 한다. b) 특정한 개의 의도된 수입은 명시된 기한 내에 관할 국경검문소에 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고, 2. a) 반입이나 수입의 감시감독 b) 개가 동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취해질 수 있는 조치 c)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3.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전부나 일부 허용 내지 승인하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5조(형사처벌규정)에 따르면 제2조 제1항에 반하여 개를 국내로 반입 또는 수입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미수도 처벌이 가능하며, 과실범인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 gefährlicher Hunde in das Inland
§ 1 Begriffsbestimmungen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Verbringen in das Inland:

jedes Verbringen aus einem anderen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Union in das Inland,

Einfuhr:

Verbringen aus einem Drittland in das Inland,

Zucht:

jede Vermehrung von Hunden,

Handel:

jede Abgabe von Hunden gegen Entgelt,

Gefährlicher Hund:

Hunde der Rassen Pitbull-Terrier, American Staffordshire-Terrier, Staffordshire-Bullterrier, Bullterrier und deren Kreuzungen sowie nach Landesrecht bestimmte Hunde.

§ 2 Einfuhr- und Verbringungsverbot

(1) Hunde der Rassen Pitbull-Terrier, American Staffordshire-Terrier, Staffordshire-Bullterrier, Bullterrier sowie deren Kreuzungen untereinander oder mit anderen Hunden dürfen nicht in das Inland eingeführt oder verbracht werden. Hunde weiterer Rassen sowie deren Kreuzungen untereinander oder mit anderen Hunden, für die nach den Vorschriften des Landes, in dem der Hund ständig gehalten werden soll, eine Gefährlichkeit vermutet wird, dürfen aus dem Ausland nicht in dieses Land eingeführt oder verbracht werden.

(2) Die Bundesregierung wird ermächtigt, durch Rechtsverordn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1.

vorzuschreiben,

a)

dass bestimmte Hunde nur über bestimmte nach tierseuchenrechtlichen Vorschriften eingerichtete Grenzkontrollstellen in das Inland eingeführt werden dürfen oder bei diesen Grenzkontrollstellen vorzuführen sind,

b)

dass das beabsichtigte Einführen bestimmter Hunde binnen einer zu bestimmenden Frist bei der zuständigen Grenzkontrollstelle anzumelden ist.

2.

Vorschriften über

<p>a) die Überwach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p> <p>b) die Maßnahmen, die zu ergreifen sind, wenn Hunde nicht den Anforderungen nach diesem Gesetz entsprechen, sowie</p> <p>c) das Verfahren zu erlassen.</p> <p>3. Ausnahmen von Absatz 1 ganz oder teilweise zuzulassen oder zu gewähren sowie die Voraussetzungen und das Verfahren zu regeln.</p> <p>§ 5 Strafvorschriften</p> <p>(1)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entgegen § 2 Abs. 1 einen Hund in das Inland verbringt oder einführt.</p> <p>(2) Der Versuch ist strafbar.</p> <p>(3) Handelt der Tät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fahrlässig, ist die Strafe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Geldstrafe.</p>
--

(2) 맹견사육허가(제20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20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할 것 2.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8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한다.</p> <p>⑥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맹견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맹견 사육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맹견의 공격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위해 맹견사육허가 전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는 교육·훈련 명령, 안락사 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독일, 투견/맹견 사육을 위한 면허 관련 규정>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2000년 8월 3일 자 맹견의 사육에 관한 내무부와 시외곽(농촌)지역, 소비자보호부 경찰시행령(POLIZEIVERORDNUNG des Innenministeriums und des Ministeriums Ländlicher Raum und Verbraucherschutz über das Halten gefährlicher Hunde vom 3. August 2000)

○ 제3조(투견사육을 위한 면허의무)

- (1) 월령 6개월 이상 투견의 사육은 연방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역경찰행정청의 면허를 요한다.
- (2) 면허는 신청인이 사육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고, 신청인의 신뢰성과 전문지식에 대한 의심이 없으며, 생명, 건강,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위험이 대립하지 않는 때에만 발급될 수 있다. 또한 면허는 개가 이미 제1조 제4항에 따른 심사의 실행 이전에 변함없는, 최대한 기술적 방법 없이 읽을 수 있는 특성표시가 있는 때에만 발급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표시를 근거로 사육자를 찾아내고, 개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면허는 한시적이고, 철회를 유보하여 발급될 수 있으며 또한 조건과 부담이 부가될 수 있다. 개가 신청인 외에 특정한, 즉 사육자에게 필요한 신뢰성과 전문지식을 가진 지정된 자에 의해서만 지도하게 할 수 있다는 부담이 면허에 부가될 수 있다. 면허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책임보험의 가입의 증명을 조건으로 한다. 다른 규정에 따른 거부 사유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3) 제2항에 따른 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지역경찰청은 생명, 건강,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이 시행령의 효력의 개시시점에 투견을 사육한 자는 2000년 9월 12일까지 지역경찰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의 사육 및 종, 수, 나이와 특성표시(제2항 제2문)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때 이러한 개의 사육에 대하여 제1항과는 별도로 면허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한 특성표시가 흠결된 경우 등록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제1문의 경우에 지역경찰청은 사육자의 신뢰성이나 전문지식에 대한 의심 또는 다른 방식으로 방지할 수 없는 생명, 신체,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사육을 금지할 수 있다. 제2항 제7문과 제3항이 원용된다. 제1문 내지 제4문은 2000년 10월 18일까지 출생했던 제1문에 명시된 개의 자손에 대하여 원용된다.
- (5) 지역경찰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와 제4항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 베를린(Berlin) 2016년 7월 7일 자, 새로운 개의 사육과 지도법(Gesetz zur Neuregelung des Haltens und Führens von Hunden in Berlin vom 07. Juli 2016) 2000년 7월 4일 자 개정시행령에 따른 1998년 5월 11일 자 베를린 개의 사육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as Halten von Hunden in Berlin (HundeVO Bln) vom 05.11.1998 (GVBl. S. 326, 370) geändert durch Verordnung vom 4. Juli 2000 (GVBl. S. 365)

○ 제4조(맹견의 지도)

- (1) 맹견은 개의 사육자나 제5조 제4항 제1문에 따른 다른 전문가에 의해서만 둘러싸인 (막힌) 소유물 외부에서 지도될 수 있다. 이때에 맹견은 최장 2미터 길이의 목줄에 묶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맹견은 둘러싸인 소유물 외부에서 언제나 물 수 없도록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 (2) 제1항 제1문에 따른 목줄의무는 개가 물 수 없도록 입마개를 하는 경우 개출입허용지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2000년 7월 25일 자 개의 사육과 지도에 관한 치안행정청시령 (Ordnungsbehördliche Verordnung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Hundehalterverordnung - HundehV) Vom 25. Juli 2000)

○ 제2조(개의 지도)

- (1) 둘러싸인 소유물 외부에서 개를 지도하는 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언제든지 사람, 동물이나 사물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를 감독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의 사육자는 계속해서 개를 감독하고, 안전하게 지도해야 한다. 18세 이상이고,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신뢰성을 가지며, 지도할 맹견이나 다른 맹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전문지식의 증명을 제출한 자만이 맹견을 지도할 수 있다.
- (2) 한 사람은 동시에 3마리 이상의 개를 지도할 수 없다. 아직 18세 이하인 자는 한 마리만을 지도할 수 있다. 맹견은 한 마리 이상의 다른 개와 동시에 교육할 수 없다.
- (3) 개는 둘러싸인 소유물 외부에서 개의 사육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는 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사육되는 맹견은 그 외에도 목걸이에 마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착용해야 한다. 이 마크는 빨간색의 둥근 모양이고, 주의 문장과 송고하게 각인된 문체를 보여주며, 지름은 40밀리미터이다. 거부증명서가 발급되었던 제8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개도 마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목걸이에 착용해야 한다. 이 마크는 녹색의 둥근모양이며, 주의 문장과 송고하게 각인된 문체를 보여주며, 지름은 40밀리미터이다.
- (4) 맹견의 사육자는 평화로운 소유물 외부에서 제10조에 따른 면허증을 휴대하고, 요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의 사육자는 평화로운 소유물의 외부에서 거부증명서를 휴대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5) 브란덴부르크 주 외부에서 지도되는 맹견은 브란덴부르크 주에서 목걸이에 사육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제3항제2문과 제4문에 따른 마크를 동 규정에 따라 그러한 표시가 규정되어 있는 한 착용해야 한다.
- (6) 개의 사육자는 개가 평화로운 소유물 외부에서 감독을 받으며 머무른다는 점을 보증해야 한다. 개는 이 시행령의 규정이 준수된다는 점을 보증하는 자에게만 양도되어야 한다.

○ 제10조(면허의무)

- (1) 맹견을 교육, 훈련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를 제외하고,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규제행정청의 면허를 요한다.
- (2) 면허는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다.
 - i) 신청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 ii)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 iii) 신청인이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신뢰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전제를 정당화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iv) 사육, 교육과 훈련에 기여하는 공간, 설비와 외부시설을 통하여 행동에 적합하고

<p>탈출이 불가능한 거처가 있는 경우</p> <p>v) 사람과 동물의 신체의 온전성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경우</p> <p>vi) 신청인이 맹견의 사육을 신청했던 한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입증한 경우. 개가 특히 위험에 처한 소유물에 감시에 기여하는 때 맹견의 사육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특별히 인정될 수 있다.</p> <p>(3) 면허는 한시적으로 그리고 철회를 유보하여 발급될 수 있고, 조건과 부담을 부가할 수 있다. 사육면허는 ISO 표준에 따른 마이크로칩 응답기를 사용하여 개를 계속해서 표시하고, 중성화하거나 불임시설을 받도록 하는 부담이 부가될 수 있다. 부담은 추후에도 개시, 변경 또는 보충될 수 있다. 제2항의 요건이 발급시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요건이 면허의 발급 이후에 누락된 것이 추후에 알려진 경우에는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p> <p>(4) 아직 1살이 되지 못한 제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사육에 대하여는 제2항과 달리 정당한 이익에 대한 입증과 중성화 수술 등에 대한 부담없이도 한시적 면허가 발급될 수 있다.</p> <p>(5) 사육자는 면허의 발급 이후 매 2년마다 필요한 전문지식과 허용성을 새롭게 증명하여야 한다(갱신하여야 한다). 제1문은 맹견의 교육과 훈련에 준용된다.</p> <p>(6) 지역규제행정청은 관할 수의사와 식품감독청과 협의하여 면허를 발급한다.</p>
--

(3)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제21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21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0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제18조·제23조를 위반하여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0조·제18조·제23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맹견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류의 중독자, 등록대상동물(맹견 포함)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등은 맹견을 기르지 못하도록 함
- <유사입법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독일, 투견/맹견 사육을 위한 면허의 결격사유>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2000년 8월 3일 자 맹견의 사육에 관한 내무부와 시외곽(농촌)지역, 소비자보호부 경찰시행령(POLIZEIVERORDNUNG des Innenministeriums und des Ministeriums Ländlicher Raum und Verbraucherschutz über das Halten gefährlicher Hunde vom 3. August 2000)

- 제3조(투견사육을 위한 면허의무)
 - (1) 월령 6개월 이상 투견의 사육은 연방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역경찰행정청의 면허를 요한다.
 - (2) 면허는 신청인이 사육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고, 신청인의 신뢰성과 전문지식에 대한 의심이 없으며, 생명, 건강,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위험이 대립하지 않는 때에만 발급될 수 있다. 또한 면허는 개가 이미 제1조 제4항에 따른 심사의 실행 이전에 변함 없는, 최대한 기술적 방법 없이 읽을 수 있는 특성표시가 있는 때에만 발급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표시를 근거로 사육자를 찾아내고, 개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면허는 한시적이고, 철회를 유보하여 발급될 수 있으며 또한 조건과 부담이 부가될 수 있다. 개가 신청인 외에 특정한, 즉 사육자에게 필요한 신뢰성과 전문지식을 가진 지정된 자에 의해서만 지도하게 할 수 있다는 부담이 면허에 부가될 수 있다. 면허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책임보험의 가입의 증명을 조건으로 한다. 다른 규정에 따른 거부사유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3) 제2항에 따른 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지역경찰청은 생명, 건강,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이 시행령의 효력의 개시시점에 투견을 사육한 자는 2000년 9월 12일까지 지역경찰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의 사육 및 종, 수, 나이와 특성표시(제2항 제2문)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때 이러한 개의 사육에 대하여 제1항과는 별도로 면허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한 특성표시가 흠결된 경우 등록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제1문의 경우에 지역경찰청은 사육자의 신뢰성이나 전문지식에 대한 의심 또는 다른 방식으로 방지할 수 없는 생명, 신체,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사육을 금지할 수 있다. 제2항 제7문과 제3항이 원용된다. 제1문 내지 제4문은 2000년 10월 18일까지 출생했던 제1문에 명시된 개의 자손에 대하여 원용된다.
- (5) 지역경찰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와 제4항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 베를린(Berlin) 2016년 7월 7일 자, 새로운 개의 사육과 지도법(Gesetz zur Neuregelung des Haltens und Führens von Hunden in Berlin vom 07. Juli 2016) 2000년 7월 4일 자 개정시행령에 따른 1998년 5월 11일 자 베를린 개의 사육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as Halten von Hunden in Berlin (HundeVO Bln) vom 05.11.1998 (GVBl. S. 326, 370) geändert durch Verordnung vom 4. Juli 2000 (GVBl. S. 365)

○ 제5조(신뢰성과 전문지식의 증명)

- (1) 맹견을 사육하거나 둘러싸인 소유물 외부에서 지도하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 (2)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서 의미하는 필요한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 i) 사람에게 대한 폭력행사를 동반한 고의의 형사범죄, 특히 강도, 강요, 성폭행, 매춘, 소요나 주거침입 또는 공권력행사 방해
 - ii) 동물보호법, 연방사냥법이나 무기법에 위반하는 형사범죄로 인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3)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 i) 알코올이나 마약중독인 자
 - ii)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에서 맹견의 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증명하지 못한 자
- (4) 제3항제2호에서 의미하는 전문가는 언제나 맹견을 사육, 지도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맹견으로부터 사람, 동물이나 사물에 대한 위협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연방 행정청이나 주행정청의 복무전에 대한 교육은 관할 행정청에 의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승인된다.
- (5) 증명된 전문지식에 대해서는 전문지식 증명서가 발급된다.
- (6) 다른 연방의 주에서 획득한 동등한 전문지식 증명서는 제5항에 따른 전문지식 증명서로 간주된다.

(4)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2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22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2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p>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후 물림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성화수술이나 교육·훈련 등 허가 시 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

(5) 맹견의 관리(제23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p>제23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20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p> <p>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p> <p>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p> <p>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p> <p>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p> <p>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 맹견과 외출 시에는 맹견을 적절히 제어·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자등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와 동행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
-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반려견이나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물림사고가 지속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제도 마련 요구 다수 존재
 - 그에 따라 동물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도 포함

<독일, 투견/맹견 사육에 따른 관리의무>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2000년 8월 3일 자 맹견의 사육에 관한 내무부와 시외곽(농촌)지역, 소비자보호부 경찰시행령(POLIZEIVERORDNUNG des Innenministeriums und des Ministeriums Ländlicher Raum und Verbraucherschutz über das Halten gefährlicher Hunde vom 3. August 2000)

- 제3조(투견사육을 위한 면허의무)
 - (1) 월령 6개월 이상 투견의 사육은 연방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역경찰행정청의 면

허를 요한다.

- (2) 면허는 신청인이 사육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입증하고, 신청인의 신뢰성과 전문지식에 대한 의심이 없으며, 생명, 건강,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위협이 대립하지 않는 때에만 발급될 수 있다. 또한 면허는 개가 이미 제1조 제4항에 따른 심사의 실행 이전에 변함없는, 최대한 기술적 방법 없이 읽을 수 있는 특성표시가 있는 때에만 발급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표시를 근거로 사육자를 찾아내고, 개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면허는 한시적이고, 철회를 유보하여 발급될 수 있으며 또한 조건과 부담이 부가될 수 있다. 개가 신청인 외에 특정한, 즉 사육자에게 필요한 신뢰성과 전문지식을 가진 지정된 자에 의해서만 지도하게 할 수 있다는 부담이 면허에 부가될 수 있다. 면허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책임보험의 가입의 증명을 조건으로 한다. 다른 규정에 따른 거부 사유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3) 제2항에 따른 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지역경찰청은 생명, 건강,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위협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이 시행령의 효력의 개시시점에 투견을 사육한 자는 2000년 9월 12일까지 지역경찰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의 사육 및 종, 수, 나이와 특성표시(제2항 제2문)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때 이러한 개의 사육에 대하여 제1항과는 별도로 면허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한 특성표시가 흡결된 경우 등록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제1문의 경우에 지역경찰청은 사육자의 신뢰성이나 전문지식에 대한 의심 또는 다른 방식으로 방지할 수 없는 생명, 신체,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위협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사육을 금지할 수 있다. 제2항 제7문과 제3항이 원용된다. 제1문 내지 제4문은 2000년 10월 18일까지 출생했던 제1문에 명시된 개의 자손에 대하여 원용된다.
- (5) 지역경찰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와 제4항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4조(특별 사육의무, 목줄과 입마개 착용의무)

- (1) 투견, 제1조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종과 그 교배종인 개 및 맹견은 사람, 동물이나 사물에 위협을 야기할 수 없도록, 특히 최대한 개가 도망할 수 없도록 사육, 감독되어야 한다. 제3조 제4항 제3문이 원용된다.
- (2) 투견과 맹견은 평화로운 소유물 외부에서 개를 안전하게 지도한다는 점을 보장하고 사육자에게 필요한 신뢰성을 갖춘 자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 (3) 월령 6개월 이상인 투견과 제1조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종과 그 교배종 또한 맹견에게는 평화로운 소유물 외부에서 목줄에 묶여 있어야 한다. 개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개의 사육자를 찾아낼 수 있는 특성표시가 목걸이에 부착되어야 한다. 맹견은 제2문에 따른 특성표시와 관계없이 추가로 제3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 (4) 월령 6개월 이상인 투견과 맹견은 평화로운 소유물 외부에서 무는 행위를 방지할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 (5) 사육자나 사육자로부터 개의 지도를 위임받은 자는 투견과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종과 그 교배종인 개를 평화로운 소유물 외부에서 지도하는 경우 면허나 제3조 제5항에 따른 고지 또는 제1조 제4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공증된 복사본을 휴대하고 요청에 기하여 심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기타 통제권한을 가진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지역경찰청은 투견이 아닌 제1조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종과 그 교배종인 개에 대

하여 개별경우에 사람, 동물이나 사물이 위태롭지 않은 때 제3항 제1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예외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또한 특정한 자로 제한되고, 한시적이거나 철회를 유보하여 발급될 수 있고 또한 부담 및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 부담은 또한 추후에 명령, 변경 또는 보충될 수 있다.

- (7) 투견이나 맹견의 사육을 포기하는 자는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지체없이 종래의 관할 지역경찰청에 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투견이나 맹견의 분실과 사육자의 지역변경시에도 종래의 관할 지역경찰청과 현재의 관할 지역경찰청에 지체없이 고지해야 한다.

□ 베를린(Berlin) 2016년 7월 7일 자, 새로운 개의 사육과 지도법(Gesetz zur Neuregelung des Haltens und Führens von Hunden in Berlin vom 07. Juli 2016) 2000년 7월 4일 자 개정시행령에 따른 1998년 5월 11일 자 베를린 개의 사육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as Halten von Hunden in Berlin (HundeVO Bln) vom 05.11.1998 (GVBl. S. 326, 370) geändert durch Verordnung vom 4. Juli 2000 (GVBl. S. 365)

○ 제6조(부담과 조치)

- (1) 관할 행정청은 제3조제2항제1문에서 제3문에 따른 개가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사육자에게 개의 사육에 대한 부담을 부가할 수 있고, 특히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명령을 하고 사육자에게 맹견의 지도에 대하여 전문지식의 증명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2)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보전 또는 개의 살육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육금지, 몰수와 개의 살육)

관할 행정청은 개의 사육으로 인하여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맹견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몰수 또는 맹견의 살육을 명해야 한다.

- i) 해당 개를 제5조제1항에 따라 맹견과의 접촉에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사육하는 경우
- ii) 사육자가 제10조제5항에 따라 맹견의 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iii) 사육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개를 교육, 번식 또는 취득한 경우

○ 제8조(개의 훈련과 번식)

- (1)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의 훈련은 금지된다. 개의 사육과 훈련에 있어서는 특별히 사람과 동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적합한, 언제나 사육자를 따르는 개를 양성하는 것이 추구되어야 한다.
- (2)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의 번식, 거래와 취득은 금지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개의 번식은 금지된다. 개의 번식에 있어서는 유전자적 특성의 최대치한의 다양성이 유전자적 공격성의 특성의 선택적 강화를 대신하여 담보될 수 있다.

(6) 맹견의 출입금지 등(제24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p>제24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맹견출입금지구역의 확대
- 어린이 및 노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존 금지장소(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어린이공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

(7) 보험의 가입 등(제25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제25조(보험의 가입 등)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로 정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 보험가입 의무 관련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
- 보험가입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규정 마련
-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제26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26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0조에 따른 맹견 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 개물림사고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격성을 보인 개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관리 강화
 - 다만, 개가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 경우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므로 개의 공격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제공할 계획
- 기질평가 절차 등 관련 검토

< 국내 타법사례 >

□ 국내 타법사례는 ① 위원회가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처분을 내리는 경우*와 ② 법원이 직권으로 처벌과 함께 판단하여 처분을 내리는 경우**로 나뉨(두 경우 모두 향후 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룰 수 있음)

* 「공익사업 및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등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법원이 직권으로 처벌과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 기질평가의 시점을 개물림사고 발생시로 정하는 경우 규제의 측면에서 더욱 강한 규제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 향후 기질평가를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 등 예방적 차원에서 활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가 전문적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기질평가 시점 추가 검토

< 해외사례(미국, 영국 등) >

□ ①미국 일부 주의 경우 지자체의 위험한 개 지정(입마개 의무화 등) 이후 행정법원에서 판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②영국의 경우 형사법원이 개물림사고에서 직권으로 안락사 명령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뉨

(9) 비용부담 등(제27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27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소유자가 비용(10~20만원으로 추정)을 부담하도록 하여 동물 사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기질평가의 남용 예방하고자 함

(10) 기질평가위원회(제28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28조(기질평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제20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제26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p>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의 기질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기질평가위원회는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

(11) 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제29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신 설>	제29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거주지,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서 기질평가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소유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질평가를 위하여 소유자등의 진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12) 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제30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30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고·수사에 대한 기록 및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 개물림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기록 등 기질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13) 비밀엄수의 의무 등(제32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p>

- <유사입법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현행 「동물보호법」 제26조 제3항

3.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제32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취소를 받은 사람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면제의 범위,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의 체계적 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국가 자격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유사 입법례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지도사의 자격)

- 공인증개사법 제4조(자격시험)
- 수의사법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제33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신 설>	<p>제33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취득에 따른 업무 범위를 지정하여 반려동물 행동지도 전문가로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토록 함
- 유사 입법례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업무)
 -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 수의사법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3)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제34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신 설>	<p>제34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지도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p>③ 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자격 취득자가 동물보호 및 복지 측면에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서 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한 자격 제한 및 취소

- 유사 입법례
 - 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4) 명의대여 금지 등(제35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신 설>	<p>제35조(명의대여 금지 등) ① 제32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p>

- 민간자격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여 건전한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
- 유사 입법례
 - 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 세무사법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4. 동물의 구조 등

(1) 동물의 구조·보호(제36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6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p>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p>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 전부개정안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의 약칭을 삭제(안 제17조제1항)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중복(특별자치시장)* 해소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시장 포함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제37조/제38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p> <p>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3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6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43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6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7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5. 제48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p>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38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7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청구한 경우</p> <p>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5. 제48조를 위반한 경우</p> <p>6. 제88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p> <p>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p> <p>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7조제5항부터 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 직영(지자체가 설치)·위탁(지자체 지정)동물보호센터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제15조제1항 및 제4항→안 제37조 및 제38조)
-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역할 추가
-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기관,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동물병원 원장)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대상을 확대(단체→단체등)
- 동물보호센터 내 학대행위 발생에 대하여 지정취소하도록 관리 규정 강화

(3)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제39조/제40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39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이하 “보호시설운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⑤ 보호시설운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p> <p>⑥ 제76조제1호·제2호 및 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되거나 보호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없다.</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제4항을 위반한 보호시설운영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제도화 및 시설·운영 기준 마련

- '18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 마련하겠다고 답변

*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한나네보호소'의 철거 반대 요구 ('18.5.)

- 동물복지종합계획(‘20~’24년)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포함
- 현행 「동물보호법」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기증 또는 양도받은 반려동물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정 마릿수 이상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미비하여 동물에 대한 적절한 임시보호 등을 담당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효과적인 행정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개념과 역할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제 운영을 기본적인 규제체계로 정립하는 한편, 해당 시설이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각종 법정 의무 미준수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효과적인 동물보호 체계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 보호시설설치자 및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영업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규정
 - 19세 미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 민간동물보호시설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4) 신고 등(제41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16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유기동물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p>제41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학대동물 2. 유실·유기동물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3.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4. 제27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5.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종사자 7. 제7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의 장 및 그 종사자 3. 제39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및 그 종사자 4. 제53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5. 제55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6. 제6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7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8.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신고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대표) 또는 동물보호센터(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기관) 또는 동물보호센터(기관)으로 변경
-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민간동물보호시설 설치자 및 종사자를 추가

(5) 공고(제42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제17조(공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공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현행과 동일

(6) 동물의 반환 등(제43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 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 야 한다.</p> <p>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 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p> <p>2.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 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 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 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p> <p>②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 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p>	<p>제43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제36조에 해당하는 동 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p> <p>1.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 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p> <p>2.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36조제1 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 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p> <p>②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 인 제36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 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 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 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 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 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 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90 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p>

○ 소유자에게 학대받아 구조된 동물을 반환할 경우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유자의 사육 계획서 제출 의무 도입

- 제2항 신설에 따라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보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사육계획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유자가 자신이 제출한 사육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함

(7) 보호비용의 부담(제44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 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 구할 수 있다.</p> <p>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 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 우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 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 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 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44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 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 다.</p> <p>②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 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 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 와 시장·군수·구청 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5조제2호에 따라 그 동 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 현행과 같음

(8) 동물의 소유권 취득(제45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p>	<p>제45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43조제2항 신설에 따라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9)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제46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46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 2.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 <p>② 소유자등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사립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동물의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시·군·구에 귀속된다.</p> <p>④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p>

- 소유자를 아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소유권을 인수하여 동물의 유기 및 학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소유자
 -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을 사육·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 * 자체적인 분양 노력, 반려견 훈련 등 해결 노력 등을 거친 경우
- 소유자가 인수신청을 한 경우 소유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10) 동물의 기증·분양(제47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p>	<p>제47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때에는 등록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 동물인수제 신설 반영
- 지자체 소유의 등록대상동물 기증 또는 분양 시 미등록견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여 동물등록 활성화 도모

(11)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제48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p> <p>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p>	<p>제4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p> <p>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p>

-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의무 대상자를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
- 동물장묘업이 등록업에서 허가업으로 상향된 것을 반영

제3절 동물실험의 관리 등

○ 현행 제3장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제4장으로 규정

현행	전부개정안
제3장 동물실험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제49조(동물실험의 원칙)
<신설>	제50조(전임수의사)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51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제52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3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제54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55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신설>	제5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57조(심의 후 감독)
<신설>	제58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59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6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1.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동물보호의 원칙(제49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9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내용 : 현행과 같음. 일부 자구 수정 있음

2.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전임수의사(제50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신 설>	<p>제50조(전임수의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p> <p>②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 내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를 전담으로 관리하는 전임수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

3.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동물실험의 금지 등(제51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p> <p>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p>	<p>제51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54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p> <p>2.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p>

- 유실·유기동물 및 봉사동물 대상 실험의 감독 강화를 위해 제3기관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 '19년 국민청원('19.6. 검역탐지견 사용 동물실험 감독요구)에 따라 발표한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관련 개선방안」에서 '제3기관의 동물실험 심의' 포함

4.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의 금지(제52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험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험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험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제24조의2와 같음

- 이 내용은 2018. 3. 20. 일부개정(법률 제15502호)에서 신설, 2020. 3. 21.부터 시행
- 이 규정의 신설 당시, 법체계적 측면에서 볼 때, '실험동물'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동물실험시설의 주체 및 관리'에 대한 제약을 하고 있는 반면, 「동물보호법」은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동물보호법」에 동물실험시설의 주체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괴리감이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렇지만 i)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는 미성년자에게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실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식품부의 의견, ii)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식약처 소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시설의 관리를 대상²⁹⁾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실험

29)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 등에서 교육내용을 변경하거나, 동물실험기관과 연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2년 이상) 부여(2020. 3. 21. 시행)
- 세계적으로도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동물해부실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내외로 확산³⁰⁾

<표> 교육과정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해외 현황³¹⁾

국가	해당국가의 사례
뉴질랜드	초중고교에서 동물실험을 할 경우, 뉴질랜드 과학교육자연합(NZASE, New Zealand Association of Science Educators)이 운영하는 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AEC, Animal Ethics Committee)의 승인 필요
미국	학생선택법(student choice law)에 의거, 동물해부실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의 권리 보장(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욕, 일리노이, 플로리다,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코네티컷,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등11개주) 법은 없지만, 주정부 또는 교육부에 의한 유사한 정책 시행 (뉴멕시코, 루이지애나, 미시간, 메인, 뉴햄프셔,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및 워싱턴 DC)
슬로바키아	학교에서의 해부실험 금지 (1995, 교육부)
이탈리아	학생에게 동물실험 및 해부실험에 불참할 수 있는 권리 부여 (1993, 의회)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카타로니아	대체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위해가 되는 동물실험 금지 (동물해부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모형 등이 있으면 동물실험이 금지되므로, 실제 동물해부실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네델란드, 스위스, 폴란드	대학 미만의 학교에서의 해부실험 금지
스웨덴	1998년 스웨덴 국립학교위원회에서 해부 금지 권고 (법적 금지사항은 아님)
영국	해부실험이 법적 금지사항은 아니지만 RSPCA의 1995년 조사결과, 5,000개 학교 중 3%의 학교에서만 해부실험 시행

1.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2.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

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 9. 45면 이하.

31) 앞의 검토보고서 참고.

국가	해당국가의 사례
아르헨티나	1987년에 법으로 해부실험 금지
브라질	1979년에 법으로 대학 미만의 학교 및 18세 이하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 수행 금지
콜롬비아	1989년에 법으로 선생/학생이 고통이나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것 금지 1992년에 대학 미만의 학교에서 살아있는 동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실험 금지
칠레	1995년에 고등학교에서 해부실험 금지
인도	1998년에 인도 라자스탄주에서 동물해부 금지

5.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제53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p> <p>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53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p> <p>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55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p> <p>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제56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제54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탁하는 협약을 맺은 경우</p> <p>2.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p> <p>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내용 중 농림축산식</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의 발생 즉시 윤리위원회에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제55조제1항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 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제2항 변경

* (유사입법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심의를 거친 실험 내용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여 심의의 실효성 확보

6.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제54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54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p> <p>② 공용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 위탁한 실험 2. 제51조 단서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제51조 각 호의 동물실험 3. 제5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신청한 동물해부실험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4. 둘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험으로 각각의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실험을 심의 및 지도·감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용윤리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실험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 ③ 제2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제53조제4항,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설치,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동물실험시행기관 또는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두어 심의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지정 근거 마련

* (유사입법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공용윤리위원회에도 변경심의, 심의의 공정성 보장 및 심의 후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7.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윤리위원회의 구성(제55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제27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	제55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p>③ 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p>④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⑥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p>③ 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p>④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⑥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족수 상한 폐지
-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신설에 따라 공동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서 삭제

8.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제56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2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이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 	<p>제5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이 제49조의 원칙에 맞게 시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p> <p>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행하도록 지도·감독</p> <p>4.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p> <p>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심의·확인·평가 및 지도·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9.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심의 후 감독(제57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57조(심의 후 감독)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제1항의 위원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하여야 한다.</p> <p>④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제5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여 심의의 실효성 확보

10.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제58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신 설>	<p>제58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3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및 평가

-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서 전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경미한 검토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윤리위원 1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가 증가하게 될 윤리위원회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 현행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전문위원제 상향입법

11.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59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신 설>	<p>제59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혐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이수 의무화 및 동물실험시행기관 종사자의 교육 기회 부여

12.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지도·감독(제60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제2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6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규정신설에 따른 내용 반영

제4절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현행 제4장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제5장으로 규정

현행	전부개정안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1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신설>	제62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신설>	제6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설>	제64조(인증농장의 표시)
<신설>	제65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신설>	제66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신설>	제67조(인증 취소 등)
<신설>	제68조(사후관리)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제69조(부정행위의 금지)
제31조(인증의 승계)	제70조(인증의 승계)

- 현행법상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 중
-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유효기간 및 인증갱신제 신설
-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인증표시의 근거 마련 및 제재수단 신설

1.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제61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61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해 주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⑧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절차 및 인증농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동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농장동물”로 약칭
-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근거 마련
- 인증기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신뢰성 제고

- * 입법사례: 친환경농어업법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 인증 재심사 제도 도입으로 인증 신청자의 권익 보호 및 인증제도의 신뢰 제고
 - * 입법사례: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 일부 항 별도 조문으로 분리

2.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62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62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조직·시설 및 인증업무 규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공공기관 및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기관이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 함으로써 인증의 효율성 제고
 - 검역본부는 인증기준 관리, 표시위반 단속, 인증심사원 교육 등 추진
 - * 입법사례: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3.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63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6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2조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거나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입법사례: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인증농장의 표시(제64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64조(인증농장의 표시) ① 인증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농장의 표시에 관</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와 표시기준 방법의 근거 마련
- 현행 제29조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수정하여 별도 조문으로 분리

5.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제65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신 설>	<p>제65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①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축산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인증농장에서 생산할 것 나. 농장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것 다. 농장동물을 도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에서 도축할 것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축산물: 인증농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의 축산물: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원료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축산물: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p>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지판 또는 풋말</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축산물의 종류에 따른 표시 요건, 축산물 포장에 따른 표시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

* 입법사례: 축산법 제42조의6(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6.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제66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신 설>	제66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는 인증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따른 지원사항 규정(기존 조문 이동)

7.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인증 취소 등(제67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신 설>	제67조(인증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p>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취소 근거 규정(기존 조문 이동)

8.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사후관리(제68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68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인증농장이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출입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 인증 신청 농장에 대한 조사, 인증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요부 조사 등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축산물 표시 영업자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과정을 명확하게 관리

9.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부정행위의 금지(제69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는 행위 2. 제29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p>제69조(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는 행위 2.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4.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항 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농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제65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을 따르지 아니한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다. 제65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p>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거짓이나 부정한 인증심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및 유사표시 등의 금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10.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인증의 승계(제70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31조(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70조(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현행 제31조와 같음

제5절 반려동물 영업

○ 현행 제5장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제6장으로 규정

현행	전부개정안
제5장 영업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71조(영업의 허가)
제33조(영업의 등록)	
<신설>	제72조(맹견취급영업에 대한 특례)
제33조의2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33조의3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제73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제74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제34조 (영업의 허가)	제75조(영업의 등록)
<신설>	제76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35조 (영업의 승계)	제77조(영업 승계)
<신설>	제78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신설>	제79조(직권말소)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신설>	제81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신설>	제82조(거래내역의 신고)
<신설>	제83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제37조(교육)	제84조(교육)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제85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신설>	제86조(과징금의 부과)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신설>	제87조(영업장의 폐쇄)

- <1허가, 7등록제 → 4허가, 4등록제>로 변경
- 맹견취급허가의 신설
- 영업결격사유의 신설·정비
- 휴·폐업 등의 신고와 직권말소 신설
- 영업자 준수사항의 개별화, 구체화
- 그 밖의 준수사항으로 반려동물 영업을 건전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구축도모
- 영업규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과징금 및 영업장 폐쇄 규정 신설

1.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영업의 허가(제71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34조(영업의 허가)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 	<p>제71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우 3.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허가영업의 대상을 기존 동물번식업(동물생산업) 외에 등록영업이었던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까지 확대
- 영업은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을 대상으로 하나, 동물장묘업의 경우 반려동물 외에 실험동물 등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허가사항의 변경은 변경허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에 의하도록 구분함(개정안 제71조제4항)
- 휴업·폐업 및 재개는 현행대로 신고에 의하도록 하되 허가영업과 등록영업을 함께 규정(개정안 제78조제1항)
- 허가영업의 결격사유(현행 제34조제4항)와 등록영업의 결격사유(현행 제33조제4항)가 서로 동일한 바,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개정안 제76조)

2.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맹견취급영업의 특례(제72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신 설>	제72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하는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 취급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이하 “맹견취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맹견을 번식시킨 경우 2. 맹견을 수입한 경우 3. 맹견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4. 보유하고 있는 맹견이 죽은 경우 <p>④ 맹견취급을 위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제71조제3항 외에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맹견이 영업의 대상으로 거래되어 소유자에 이르기까지의 관리를 강화하여 맹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을 번식·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와 별도로 ‘맹견취급허가’를 받도록 함

○ 맹견의 양도·양수 등 일정 사실에 대한 영업자의 신고 의무를 부과(개정안 제72조제3항) 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개정안 제72조제4항)을 준수토록 하여 영업 일선에서의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유사 입법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3.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제73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3조의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구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p>	<p>제73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현행 제33조의2와 제33조의3를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
- 토지가격 등 지자체에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조례 제·개정시 응당 감안해야 할 사항들인 만큼, 오히려 법률상에 명시되어 고려사항이 지나치게 한정되지 않도록 삭제

4.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제74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74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는 제71조제1항제4호의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현행 영업의 등록 규정에 있던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조항으로 구성
-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도 설치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

5.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영업의 등록(제75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제75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p>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 영업의 종류를 허가영업(개정안 제71조)과 등록영업으로 구분하여 해당 규정에 직접 명시
- 등록사항의 변경은 변경등록, 경미한사항의 변경은 신고에 의하도록 구분함
- 휴업·폐업 및 재개는 현행대로 신고에 의하도록 하되 허가영업과 등록영업을 함께 규정

○ 허가영업의 세부범위 및 시설·인력 기준에 대해 시행규칙에 위임(현행 제32조)

6.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제76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76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8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5. 제85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허가영업의 결격사유(현행 제34조제4항)와 등록영업의 결격사유(현행 제33조제4항)가 서로 동일한 바,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

7.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영업승계(제77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35조(영업의 승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을 준용하되, 제33조제4항 중 “등록”과 제34조제4항 중 “허가”는 “신고”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3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7조(영업승계) ① 제7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76조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7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 내용 변경없음. 문구 및 인용조문 등 수정

8.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휴업·폐업 등의 신고(제78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78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계획서(이하 “동물처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휴업·폐업 및 재개 신고가 허가영업(현행 제34조제2항)과 등록영업(현행 제33조제2항)에 각각 규정되어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함께 규정
- 영업자로 하여금 휴업·폐업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해당 계획서의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영업의 휴업·폐업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 및 적절한 수준의 관리 기대

* 유사 입법례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및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9.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직권말소(제79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신 설>	<p>제79조(직권말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허가·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지자체에서 허가·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점을 개선

* 유사 입법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6항 및 제7항

10.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80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p>	<p>제8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것</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반출 기록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p> <p>3.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p> <p>4. 동물 사체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p> <p>5.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p> <p>6.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p> <p>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등록·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p> <p>③ 동물판매업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2.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p> <p>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p> <p>4. 동물의 번식, 반입·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p> <p>5.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p> <p>6. 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p> <p>7.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p> <p>8. 제84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p> <p>9.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p> <p>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등록·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p> <p>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을 것</p> <p>②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을 것</p> <p>2. 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p> <p>3. 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기록할 것</p> <p>③ 동물수입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할 것</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2. 수입의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p> <p>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않을 것</p> <p>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것</p> <p>⑤ 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않을 것</p> <p>2.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것</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영업자 준수사항 중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의 안정성 향상 및 형벌 등 강화된 처벌기준 근거 마련
- 반려동물 영업자가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제1항)과 업종별 개별 준수사항(제2항~제5항)을 규정
 - * (현행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나목)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한다.
 - *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 관리 등을 위해 수의사와 적절한 연계를 확보토록 함
 - * (현행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라목6))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된다.
 - * (현행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자목)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장 전부개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 * (현행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가목) 영업장 내부에는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만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 * (현행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가목7)) 동물장묘업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하려는 때에는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 * (현행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나목8)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 * 반려동물 영업자가 분뇨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함
- * (현행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가목8) 등)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현행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타목)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각각 전시, 위탁관리, 미용 및 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 *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업명의를 사용케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 * (현행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다목4))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다.
- * 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 * 동물 수입내역 신고 규정 신설
- * 수입 신고와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금지 규정 신설
- * (현행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나목2)) 다음의 월령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가) 개·고양이: 2개월 이상
- * 동물화장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 신설
- * 등록대상동물 현황 파악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동물장묘업자의 사체 처리 후 신고 규정 신설

○ 영업자 준수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위임 근거

11.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제81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신 설〉	<p>제81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영업자를 제외한다)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준용한다.</p>

- 현행 규정(제36조제2항)이 등록대상동물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의무의 적용대상을 동물판매업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판매 행위가 가능한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입업자까지 추가

12.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거래내역의 신고(제82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신 설>	<p>제82조(거래내역의 신고)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은 제98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p>

- 반려동물 영업자(판매업, 수입업, 생산업)가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여 반려동물 이력시스템의 제도적 기반 마련

13.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제83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신 설>	<p>제83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보호 및 동물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영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권고 근거 마련
- 유사 입법례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14.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교육(제84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제37조(교육) ①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신 설></p> <p>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84조(교육) ①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7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제2항의 정기 교육 외에 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추가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내용, 시기,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현행 영업자 교육을 허가·등록 전 교육(제1항), 정기교육(제2항), 벌칙교육(제3항)으로 명확히 구분
- 유사 입법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15.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제85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3.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5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3.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1조제1항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6. 제71조제4항 또는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1조제3항 또는 제7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9. 제74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 한 경우</p> <p>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p> <p>12. 제8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정비함

16.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과징금의 부과(제86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86조(과징금의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85조제1항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영업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기존의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물 또는 영업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공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 유사 입법례 : 축산법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17.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영업장의 폐쇄(제87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87조(영업장의 폐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1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영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p> <p>1.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p> <p>2. 제8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1.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p> <p>2.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p> <p>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과 절차를 규정

- 유사 입법례 : 식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
- 영업장 폐쇄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보유한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 실태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는 지자체의 조치 근거 마련

제6절 보칙

- 현행 제6장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제7장으로 규정

현행	전부개정안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제39조(출입·검사 등)	제88조(출입·검사 등)
<신설>	제8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제90조(동물보호관)
<신 설>	제91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92조(명예동물보호관)
<신설>	제93조(동물복지진흥원)
제42조(수수료)	제94조(수수료)
제43조(청문)	제95조(청문)
제44조(권한의 위임)	제9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97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98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신설>	제86조(과징금의 부과)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신설>	제87조(영업장의 폐쇄)

1. 제7장 보칙 - 출입·검사 등(제88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39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자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출입·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p>	<p>제88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보호시설운영자 3.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61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 5.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 6. 제6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한 자 7. 영업자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 기준·운영 기준 등의 사항 및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입·검사 목적 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p>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제7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의 준수여부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71조제3항 및 제7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의 준수여부와 제80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p>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관할 시·군·구의 점검 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이하 “출입·검사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출입·검사등의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등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등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등을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입·검사등의 목적 2. 출입·검사등의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등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 법 개정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이 된 보호시설과 신설된 인증기관 및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자에 대해 공무원이 출입·검사가 가능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물 보호·복지 강화 및 제도의 투명성 강화
- 보호시설 설치자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년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법률 38조의2에서 규정한 영업자 점검에 대한 사항을 조문 이동 규정하되, 맹견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점검하도록 규정
- 현행법률 38조의2에서 규정한 영업자 점검결과 보고에 대한 사항을 조문 수정하여 이동 규정
- 영업자, 보호시설설치자, 인증기관의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 제7장 보칙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제89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8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학대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2. 제39조에 따른 보호시설 3. 제71조 및 제75조에 따른 영업장 <p>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동물보호센터·보호시설·영업장의 종사자, 이용자 등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을 것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2.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유자등이 자기 동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호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88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동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동물학대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을 상시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는 시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의무 부여

- 입법사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3. 제7장 보칙 - 동물보호관(제90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의	제90조(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이하 “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물보호감시원의 명칭 변경

4. 제7장 보칙 -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제91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신 설>	제91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동물보호감시원이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입법사례: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5. 제7장 보칙 - 명예동물보호관(제92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제92조(명예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명칭 변경

6. 제7장 보칙 - 동물복지진흥원(제93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93조(동물복지진흥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9. 공고의 방법</p> <p>10.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책 분석 2.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의 지원 4. 기질평가에 관한 기술지원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관한 자격관리 업무의 지원 6. 동물학대 방지와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지원 7.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지원 8. 동물실험 대체방법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9.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의 지원 10.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지원 11. 영업자에 대한 점검의 지원 12. 반려동물 사료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4.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동물복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하여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7. 제7장 보칙 - 수수료(제94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하려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p>제9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제32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및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 제61조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갱신 및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 제71조, 제72조 및 제75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영업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등에 대해 수수료 발급 근거 마련

8. 제7장 보칙 - 청문(제95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4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제7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제29조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p>제9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제34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제38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폐쇄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5. 제6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 제6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7.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 새롭게 신설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제도, 민간동물보호시설,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 제고

9. 제7장 보칙 - 권한의 위임·위탁(제96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제4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농림축산 또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한 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그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 동물복지진흥원 등 기관에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지침 통보 및 지도·감독 근거 마련

10. 제7장 보칙 -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제97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허가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제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97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봉사동물 중 국가소유 봉사동물의 마릿 수 및 해당 봉사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제39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6. 제53조부터 제58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제61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8. 제71조 및 제75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9. 제88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를」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군견 등과 같이 국가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동물보호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동물복지인증기관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11. 제7장 보칙 -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제98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신 설></p>	<p>제98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동물보호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1. 제11조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 또</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p> <p>2. 제19조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한 자 및 신고한 자가 소유한 맹견에 대한 정보</p> <p>3.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허가철회를 받은 사람 및 허가 받은 사람이 소유한 맹견에 대한 정보</p> <p>4. 제20조제3항 및 제26조에 따라 기질평가를 받은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p> <p>5.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제7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p> <p>6. 제97조제1항 각 호의 정보</p> <p>7.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 등 관련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활용의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같은 항 후단의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동물보호정보 등의 수집·관리·공개 및 정보의 요청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물사육금지처분, 맹견 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

* 입법사례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제2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가능
- 농식품부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농식품부가 정보 수집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
- 농식품부가 수집한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안정적 관리 도모

제7절 벌칙

- 현행 제7장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제8장으로 규정

현행	전부개정안
제7장 벌칙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제99조(벌칙)
<신설>	제100조(벌칙)
제46조의2(양벌규정)	제101조(양벌규정)
<신설>	제102조(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제47조(과태료)	제103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
-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신설

1. 제7장 벌칙 - (제100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신 설>	<p>제100조(벌칙) 제102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이수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이수명령 집행의 실효성 확보
 - * 수강명령을 받은자가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집행유예취소가 가능하나, 이수명령에 불응할 경우 집행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없음
 - ** 입법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2. 제7장 벌칙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02조)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안
<p><신 설></p>	<p>제102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9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p> <p>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p>

현행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p>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⑦ 형벌과 병과하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 동물학대자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로 동물학대 재발 방지
- 학대행위자에 대해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처분 병과 근거 마련
- 병과된 명령의 집행 기한 및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의 실효성 확보
-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 규정

<참고: 국가별 동물학대 최대 형량>³²⁾

국가	최대 형량	논평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5년	법률은 각 주마다 다르다. 뉴사우스웨일스와 서호주는 5년의 구금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1년	동물 보호법 2004 동물의 보호에 대한 연방법

32) <http://politicalanimal.org.uk/wp-content/uploads/2018/02/Sentencing-briefing-1-1.pdf>

국가	최대 형량	논평
		최근 2년 형으로 올리기 위해 형법 개정 작업 중이다
벨기에	6개월	벨기에 보건부 (Belgian Ministry of Health)
불가리아	3년	불가리아 형법 325조b
캐나다	5년	캐나다 형법 445조와 445.1조
크로아티아	6개월	동물보호법 1999
사이프러스	1년	동물복지법
체코 공화국	3년	법률 번호 246/1992, 학대에 반하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2
덴마크	2년	동물 보호에 관한 법 1991
에스토니아	1년	형법 264조
핀란드	4년	핀란드 형법 17:14A1
프랑스	2년	형법 521-1조와 521-2조 1992
독일	3년	동물보호법(2010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됨)
그리스	2년	법 4039/2012
헝가리	3년	동물에 대한 보호와 인간적인 처우에 관한 1998년의 법 28
인도	5년	인도 형법 428조와 429조
아일랜드	5년	동물 보건과 복지법 2013
이탈리아	3년※	※(동물 싸움 범죄에 대하여) 이탈리아 형법 ‘동물의 감정에 반하는 범죄’ 2004
라트비아	5년	법률들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1년	新 동물 복지법 2012
몰타	1년	동물복지법 2002
네덜란드	3년	동물보건과 복지법 1992
뉴질랜드	5년	동물 복지 수정법 2010
북아일랜드	5년	동물복지법 2011
폴란드	3년	동물보호법 1998
포르투갈	1년	법률 번호 400/82에 의한 33번째 개정 형법 그리고 법률 번호 92/95 2014의 두 번째 개정법
루마니아	3년	동물보호법 2004

국가	최대 형량	논평
슬로베니아	2년	동물보호법
스페인	18개월	동물보호법 2007 그리고 새로 업데이트된 형법
스웨덴	2년	형법에 있는 ‘동물 학대’
영국	6개월	동물복지법 2006

<참고: 미국 주별 동물학대 관련 제재 수단>

주	법령	주요내용
알라바마	ALA. CODE Section 13A-11-14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에 대한 잔혹한 행위가 처벌 대상 - B급 경죄(Class A misdemeanor)로 3,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알래스카	Alaska Statute 11.61.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학대는 A급 경죄의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사회봉사, 보상
아리조나	Arizona Statute 13-2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 및 부주의에 의한 동물학대에 대해 규정 - 1급 경죄의 경우 2,5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 고의로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죽이는 등의 행위는 6급 중죄로 처벌. 15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18개월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동물사육 3년 금지,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 가능
알칸사스	Arkansas Code 5-62-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죄로 처벌. - 150 ~ 1,000달러 미만 벌금형 또는 하루 이상의 자유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5년 내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 400 ~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7일 이상의 자유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및 30일 이상의 사회봉사 - 3회 이상 동종범죄 전과자: 900 ~ 1,000 달러 미만 벌금형 또는 90일 미만의 자유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9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명령, 병과
캘리포니아	Cal Penal Code 596-5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학대는 경죄 또는 중죄로 처벌 - 20,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주	법령	주요내용
		또는 병과
콜로라도	Colorado Revised Statute 18-9-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경죄로 400 ~ 5,000달러 벌금형 - 동물학대보호방지를 위해 관할기관에 400달러 추정 - 누범의 경우 1,000 ~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90일 이상의 자유형 또는 가택연금 또는 18개월 이하의 자유형 - 고의 등 가중처벌 시 중죄 6급 적용. 100,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 18개월 이하의 자유형, 90일 이상의 자유형 또는 가택연금 - 누범의 경우 5급 중죄 적용. 10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자유형
코네티컷	Conn Statute Section 53-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죄 또는 중죄로 처벌.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고의와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상담, 동물학대방지 교육 등을 추가할 수 있음
델라웨어	Delaware Code Ann. Title 11, Part 1, Chapter 5, Subchapter VII, 1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경죄.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피해동물 몰수. 5년 동안 사육금지 - <u>고의</u>로 학대한 경우 F급 중죄.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피해동물 몰수. 15년 동안 사육금지
콜롬비아 특별자치구	D.C. Code Ann. 22-1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80일 이하의 자유형. - 학대행위로 해당 동물이 죽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경우 중죄 적용. 2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플로리다	Florida Statute 82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중죄.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 고의가 있는 경우 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가석방 없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 누범의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조지아	Georgia Code Ann. 16-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죄 적용.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 누범의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1년 이

주	법령	주요내용
		<p>하의 자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범의 경우, 동물학대로 인해 해당 동물이 죽은 경우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 가중학대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하와이	Hawaii Rev. Stat. 711-1109	- 경죄.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아이다호	Idaho Title 25, Chapter 35, 25-35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죄. 최초 범죄 시 100 ~ 5,000달러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최초 범죄 후 10년 이내에 동종범죄 시, 200 ~ 7,000달러 벌금형 및 1년 이하의 자유형 - 3번째 범죄 시 15년 이하의 자유형, 500 ~ 9,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병과
인디애나	Ind. Code 35-46-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경죄.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 누범의 경우 고의로 학대한 경우 C급 중죄,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자유형
아이오와	Iowa Code 717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학대(animal abuse): 가중처벌이 가능한 경죄 (aggravated misdemeanor), 500 ~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 방치(neglect): 경죄로 50 ~ 500달러 벌금형 또는 30일 이하의 자유형. 고의가 입증된 경우 250 ~ 1,500달러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 고문(torture): 가중처벌이 가능한 경죄인 경우 500 ~ 5,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또한 심리치료도 함께 명할 수 있음. 누범의 경우, D급 중죄로 분류되어 500 ~ 7,500 달러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및 심리치료
캔자스	Kan Stat. Ann. 21-4310	- 경죄로 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켄터키	KY REV. Stat. Ann 525.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경죄. 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누범의 경우, D급 중죄. 1,000 ~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u>1년 이상의 자유형 선고</u>

주	법령	주요내용
루이지애나	LA Rev. Stat. Ann. 14.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학대(simple animal cruelty)의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이와 더불어 반드시 58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병과. -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의 경우, 5,000 ~ 2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메인	ME Code Ann. Title 17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동물학대의 경우 500 ~ 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누범의 경우 1,000 ~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심리상담 및 기타 치료를 함께 명할 수 있음
메릴랜드	MD Code Ann. - Criminal Code, Title 10, Subtitle 6, 10-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고의인 경우 중죄로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매사추세츠	Mass. Gen Laws Ch. 272-77 - Cruelty to Animals 266-112 - Malicious Killing of an Anim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90일의 자유형 또는 병과 - 고의로 동물을 죽인 경우 1,000달러의 벌금형과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미시간	Michigan Penal Code 750.50 - Animal Abuse/ Code 750.50b - Maliciously killing or inju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범행 시: 경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93일 이하의 자유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병과. - 2회 시: 중죄로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명령 병과 - 3회 이상 또는 고의: 중죄로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4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명령
미네소타	Minn Stat. 34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동물학대는 경죄로 7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하며 누범의 경우 3,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 3,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누범의 경우

주	법령	주요내용
		<p>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동물학대가 타인을 협박하거나 겁주기 위한 목적일 경우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4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미시시피	Miss Code Ann 97-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 고의로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인 경우, 2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 5년 내에 동일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죄로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미저리	MO Rev. Stat. 578.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 또는 유기의 경우, C급 경죄로 500달러 이하 또는 15일 이하의 자유형 - 동물학대는 A급 경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누범의 경우 D급 중죄, 3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몬타나	Montana Code Annotated 45-8-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 또는 누범의 경우 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네브라스카	Neb. Rev Stat. 28-1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 또는 방치 및 동물학대는 1급 경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누범의 경우 4급 중죄로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네바다	Nev. Rev. Stat. 574.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범행 시는 경죄로 200 ~ 1,000달러 벌금형, 10일 ~ 6개월 자유형 및 100-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 7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3회 이상의 경우 C급 중죄로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 ~ 5년 자유형
뉴햄프셔	NH Rev. Stat. Ann. 644:8 (Criminal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죄로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누범 또는 고의가 입증된 경우 B급 중죄로 4,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주	법령	주요내용
뉴저지	NJ Rev. Stat. Ann. 4:22-17 & 4:2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문란 행위(Disorderly persons Offense)로 250 ~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의 경우 4급 중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8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법원은 30일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할 수 있음. 또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해 동물의 돌봄, 치료비 등을 지불해야 함 - 청소년이 가중처벌이 가능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 유기인 경우 벌금 500달러, 도로에 유기한 경우 벌금 1,000 달러
뉴멕시코	NM Stat. Ann. 30-18-1 (Statutes, Statutory Chapters, Chapter 30, Article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4회 이상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 4급 중죄로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8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 또는 심리치료 또는 병과. 아동이 해당 범죄를 자행한 경우 반드시 심리평가와 상담을 받아야 함
뉴욕	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Article 26, Chapter 353 & 35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노스캐롤라이나	NC Gen Stat 14-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경죄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벌금형 또는 자유형 - 고의로 학대하거나 죽인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1급 중죄
노스다코타	ND Century Code 36-21-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이동, 주정차 시 차 안에 반려동물 방치 등이 포함 - 동물학대는 A급 경죄로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오하이오	Ohio Rev. Code Ann 95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경죄로 750달러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하의 자유형 - 반려동물에 대한 폭행 누범의 경우 5급 중죄로 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주	법령	주요내용
		- 징수한 벌금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와 협회에 제공
오클라호마	OK State Title 21: 1685	- 동물학대는 5,000달러 미만 또는 1년 항의 지역 구치소 또는 5년 이하의 주형무소 구금 - 방치 또는 유기는 경죄로 200 ~ 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펜실베이니아	18 PA Cons. Stat. 5511	- 타인의 가축을 학대, 도살한 경우 5백달러 미만의 벌금형 - 고의를 갖고 동물원 동물원죽인 경우 1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동물학대의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누범의 경우, 3급 중죄로 1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로드아일랜드	Rhode Island Gen Stat. 4-1-1	- 불필요한 학대행위의 경우 50 ~ 500달러의 벌금형 또는 11개월의 자유형 - 타인의 동물을 죽인 경우 100 ~ 500달러의 벌금형 또는 11개월의 자유형 -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3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1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이수해야 함
사우스캐롤라이나	S.C. Code Ann. 47-1-10	- 부당한 처우와 같은 동물학대의 경우. 최초 범행 시 60일 동안의 사회봉사명령 - 최초 범죄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자유형 또는 100 ~ 500달러의 벌금형 또는 병과 - 2차 범행: 8백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하의 자유형 - 3회 이상: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사우스다코타	SD Codified Laws 40-1-1	- 1급 경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고의로 학대하는 경우는 6급 중죄로 4,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테네시	Tenn Code Ann 39-14-202; 39-14-212	- 1급 경죄로 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1개월, 29일부터 30년 이하의 자유형 - 누범의 경우 E급 중죄로 3,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주	법령	주요내용
		<p>또는 6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동물보호비용 청구, 피해동물 몰수, 사유 금지 등의 양형을 추가할 수 있음
텍사스	Tex. Penal Code, Title 9, Chapter 42, 4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경죄로 4,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3회 이상 동종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80일 이상 2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고의 동물학대가 3회 이상인 경우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유타	Utah Code Ann. 76-9-3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급 중죄로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형법상 과실(criminal negligence)에 의한 경우 C급 경죄로 75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하의 자유형 - 이외 법원의 직권으로 심리상담, 피해동물의 몰수, 치료비용 등을 추징할 수 있음
버몬트	Vt. St. Ann. Title 13, Chapter 8, 3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누범의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의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누범의 경우 7,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이와 더불어 동물학대 방지에 관한 교육 및 심리상담, 불시점검 등을 병과할 수 있음
버지니아	VA. Code Ann. 3.1-796.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경죄로 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누범의 경우 6급 중죄로 2,500달러 미만의 벌금형 - 동물 유기에의 경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로 분류되어 250-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2개월 이하의 자유형 병과

주	법령	주요내용
워싱턴	Wash. Rev. Code 16.52.011/Sentencing Provisions: 16.52.200/ Animal Cruelty in the First Degree: 16.52.205/Animal Cruelty in the Second Degree: 16.52.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동물학대의 경우 C급 중죄로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2급 동물학대는 경죄로 3,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웨스트 버지니아	W. VA Code 61-8-19 Cruelty to animals is defin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죄로 300 ~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 누범의 경우 500 ~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90일 이상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누범의 경우 법정형은 자유형. 또한 법원에서 명령한 심리상담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불가 - 고의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 중죄로 1,000 ~ 5,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이상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위스콘신	Wis Stat. 95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급 경죄로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고의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 E급 중죄로 10,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와이오밍	Wyo. Stat. 6-3-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동물학대는 경죄로 75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 가중처벌이 가능한 학대의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 고의인 경우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병과.

제 4 장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개물림 사고 등 맹견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동물학대행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증가하는 등 동물의 관리 및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등의 금지 내용을 구체화(안 제10조)

- 1)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2)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나. 동물사육금지처분 등의 신설(안 제11조 등)

- 1)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2) 법원이 피학대동물의 생명,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반려동물 전달방법 준수의 의무화(안 제14조 및 제103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맹견수입신고의 신설(안 제19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맹견사육허가의 신설(안 제20조)

1)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2) 맹견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안 제28조 등)

1) 맹견사육허가 전 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며, 비밀엄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자료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안 제32조 등)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시험, 업무, 명의대여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함

아.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안 제39조 등)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의 준수 의무를 부과함

- 2)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안 제46조)

동물사육금지처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 소유자등이 인수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안 53조 등)

- 1)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 및 복지를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2) 윤리위원회 변경심의, 심의 후 감독, 전문위원 검토제도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
- 3)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안 제61조 등)

-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3)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함

타.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안 제71조 등)

-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 3)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맹견취급)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 4) 휴업·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동물처

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5) 영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내용을 정비함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7)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8)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9)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파.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안 제93조)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98조)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보호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4.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정책의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복지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시·도 단위의 동

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9조(적절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 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遺棄)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 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동물사육금지처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검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동물의 소유자등이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에 대한 사육금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

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게 해당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

제12조(처분의 통지 등) ① 법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의 명령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이하 이 항에서 “사육금지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육금지처분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동물사육금지처분 : 동물사육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
2. 동물사육금지가처분 :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된 때

제13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 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물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5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해야 한다.

제15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

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3.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제19조(맹견수입신고) 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할 것
2.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 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8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0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제18조·제23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0조·제18조·제23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2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증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2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3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20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25조(보험의 가입 등) ①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의 범위,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0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기질평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제20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제26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거주지,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서 기질평가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소유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고·수사에 대한 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취소를 받은 사람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면제의 범위,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5.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명의대여 금지 등) ① 제32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36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유실·유기동물
-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

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43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6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7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5. 제48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7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8조를 위반한 경우
6. 제88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한 경우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

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7조제5항부터 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이하 “보호시설운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⑤ 보호시설운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또는 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제76조제1호·제2호 및 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되거나 보호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제4항을 위반한 보호시설운영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

제41조(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피학대동물
2. 유실·유기동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3. 제39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및 그 종사자
4. 제53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5. 제55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6. 제6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7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8.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

니 된다.

제42조(공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36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36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90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45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
 2.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
- ② 소유자등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동물의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된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제47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4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제49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전임수의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 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54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52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55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제56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제54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탁하는 협약을 맺은 경우
2.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내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의 발생 즉시 윤리위원회에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제55조제1항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용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을 수행한다.

1.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 위탁한 실험
2. 제51조 단서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제51조 각 호의 동물실험
3. 제5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신청한 동물해부실습
4. 둘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험으로 각각의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실험을 심의 및 지도·감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용윤리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실험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

③ 제2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제53조제4항,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설치,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이 제49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4.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심의·확인·평가 및 지도·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심의 후 감독)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제1항의 위원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제5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53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및 평가

제59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1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해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조직·시설 및 인증업무 규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2조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인증농장의 표시) ① 인증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농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①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축산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인증농장에서 생산할 것

나. 농장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것

다. 농장동물을 도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에서 도축할 것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축산물: 인증농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의 축산물: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원료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축산물: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지판 또는 풋말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는 인증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7조(인증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68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인증농장이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출입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는 행위
2.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1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4.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가.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농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 나. 제65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을 따르지 아니한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제65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71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2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 취급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이하 “맹견취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맹견을 번식시킨 경우
2. 맹견을 수입한 경우
3. 맹견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4. 보유하고 있는 맹견이 죽은 경우

④ 맹견취급을 위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제71조제3항 외에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제71조제1항제4호의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75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8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5. 제85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7조(영업승계) ① 제7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5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76조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7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营业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계획서(이하 “동물처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직권말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것
2.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4. 동물의 번식, 반입·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6. 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7.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8. 제84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9.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을 것
- ②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을 것
 2. 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기록할 것
- ③ 동물수입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할 것
 2. 수입의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
-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않을 것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것
- ⑤ 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않을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것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영업자를 제외한다)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82조(거래내역의 신고)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은 제98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보호 및 동물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영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교육) ①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7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제2항의 정기 교육 외에 동물의 보호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추가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내용, 시기,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3.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1조제1항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6. 제71조제4항 또는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1조제3항 또는 제7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9. 제74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2. 제8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과징금의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85조제1항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영업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영업장의 폐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1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영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8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 제88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보호시설운영자
3.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61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
5.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
6. 제6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를 한 자
7. 영업자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 기준·운영 기준 등의 사항 및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제7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의 준수여부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71조제3항 및 제7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의 준수여부와 제80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관할 시·군·구의 점검 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이하 “출입·검사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출입·검사등의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등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등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등을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1. 출입·검사등의 목적
2. 출입·검사등의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등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학대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2. 제39조에 따른 보호시설
3. 제71조 및 제75조에 따른 영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동물보호센터·보호시설·영업장의 종사자, 이용자 등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을 것

2.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유자등이 자기 동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호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88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동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0조(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이하 “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2조(명예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3조(동물복지진흥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물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정책 분석
2.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의 지원
4. 기질평가에 관한 기술지원
5.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관한 자격관리 업무의 지원
6. 동물학대 방지와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지원
7.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지원
8. 동물실험 대체방법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9.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의 지원
10.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지원
11. 영업자에 대한 점검의 지원
12. 반려동물 사료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4.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2. 제32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및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
3. 제61조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갱신 및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제71조, 제72조 및 제75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영업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제9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2. 제34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3. 제38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4.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시설폐쇄
5. 제6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 제6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7. 제8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제9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농림축산 또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한 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그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7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봉사동물 중 국가소유 봉사동물의 마릿 수 및 해당 봉사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제39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6. 제53조부터 제58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제61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8. 제71조 및 제75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9. 제88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동물보호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19조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한 자 및 신고한 자가 소유한 맹견에 대한 정보
3.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허가철회를 받은 사람 및 허가 받은 사람이 소유한 맹견에 대한 정보
4. 제20조제3항 및 제26조에 따라 기질평가를 받은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
5.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제7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제97조제1항 각 호의 정보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또는 동물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 등 관련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활용의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항 후단의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동물보호정보 등의 수집·관리·공개 및 정보의 요청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 칙

제9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자
-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 3.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4. 제23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
-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4.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 제23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6. 제6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7. 제6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8. 제6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재심사 및 인증갱신을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7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자
 11. 제74조를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맹견취급의 영업행위를 한 자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2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4. 제8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동물사육금지기간 또는 동물사육금지개체분기간에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맹견 아닌 개의 소유자
 4.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을 사칭한 자
 5.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

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6.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7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9. 제80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영업자
10. 제85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자
3.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제54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80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영업자
6. 제8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발정을 유도한 영업자
7. 제8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조치한 영업자
8.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9. 제89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
10. 제98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청 목적 외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
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않은 맹견의 소유자
8. 제3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보호시설을 폐쇄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10. 제51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11. 제8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2개월이 되지 않은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12. 제87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⑥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0조(벌칙) 제102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9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동물학대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과 병과하는 수감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57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재개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8.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9. 제8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6. 제26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개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소유자
 7.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10. 제69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11.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취급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2.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
 13. 제7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4. 제80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영업자
 15. 제8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반입·반출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영업자
 16. 제8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을 표시한 영업자
 17. 제8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영업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71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 자
6. 제3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7. 제3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52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9.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8조제3항에 따른 조사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1.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71조제4항 또는 제75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3.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8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영업자
15. 제80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6. 제80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지 아니한 영업자
17. 제8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한 영업자
18. 제8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9. 제80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

20. 제81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영업자
 21. 제8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22.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23.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24. 제88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5. 제88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6.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4.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5.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6. 제18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7.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 제61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설립위원 전원(全員)이 각각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 전원의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맹견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맹견부터 적용한다.

제5조(맹견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육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제4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부터 적용한다.

제7조(윤리위원회 변경심의, 심의 후 감독 및 전문위원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 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적용례) ① 제7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제76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2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등록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업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같다.

제9조(동물처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의 동물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거래내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가 취급하는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거래내역부터 적용한다.

제12조(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으로 본다.

제13조(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4조(맹견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맹견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맹견의 관리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3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13조의2를 적용한다.

제16조(동물보호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와 운영위원회는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와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나 지정의 결격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발생한 동물의 보호비용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가 취득한 동물의 소유권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윤리위원회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윤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윤리위원회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윤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호선 또는 위촉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호선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20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날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 중인 자료를 인증기관에 이관할 수 있고, 이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장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장으로 본다. 이 경우 인장의 유효기간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4년
2.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3년
3.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2년

④ 이 법 시행 전에 행위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 인증 결격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기간 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일 전에 반려동물영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나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교육이수에 관한 규정의 경과조치) 부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와 처분의 효과 승계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 및 제38조를 적용한다.

제24조(동물보호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된 동물보호관 또는 명예동물보호관은 제90조 또는 제9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된 동물보호관 또는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본다.

제2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7조(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5일 이후 종전의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조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3제4호, 제15조제10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33조의3 전단, 제42조에 따른 조례는 제1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제18조제3항, 제24조제7호, 제37조제6항(제3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제4항, 제73조제3항,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조례로 본다.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61조”로 한

다.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를 “「동물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동물보호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를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9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④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한 자”로 한다.

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3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